

청년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2016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토론회

일시 : 2016년 9월 20일(화) 15시
장소 : 수원청년바람지대 가지가지홀

2016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토론회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5:00	15:10	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자
15:10	15:15	5	인 사 말 씀	일자리경제국장
15:15	15:20	5	토론회 개요 설명(좌장 주영훈)	수원청년미래연구소장
15:20	15:40	20	(발제 1) 청년고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 종 진
15:40	16:00	20	(발제 2) 수원형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제안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장 이 희 원
16:00	16:15	15	(토론 1)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본 청년일자리	취업준비생(경희대 졸) 이 혜 연
16:15	16:30	15	(토론 2) 청년들의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한 지 혜
16:30	16:45	15	(토론 3) 청년일자리추진을 위한 예산,조례	수원시의회 의원 장 정 희
16:45	17:00	15	(토론 4)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과 과제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 신 화 균
17:00	17:10	10	토론회 마무리 및 폐회	

목 차

1. 청년고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1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 수원형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제안	53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노동자복지센터장	
3.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본 청년일자리	69
이혜연 취업준비생(경희대 졸)	
4. 청년들의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73
한지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5. 청년일자리 추진을 위한 예산 및 조례	85
장정희 수원시의회 시의원	
6.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과 과제	97
신화균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	

발제 1

청년고용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김 종 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방정부의 청년고용정책과 새로운 사회정책 모색*

-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구직지원제도 사회적 논의 -

김 종 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무수히 많은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을 돈이 되지 않는
일자리 및 빈곤에 가두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ILO 결의문을 바탕으로 한 범 세계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 문제의식

□ 청년고용 지원정책 - 청년희망재단 기금 vs. 청년수당

- 최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으로 제시된 ‘청년수당’ 문제로 중앙정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서울시)간 정책 시각 차이와 이견이 발생한 가운데, 8월 26일 경기도에서도 2기 연정 합의안으로 청년구직지원금(청년수당)을 2017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되었음. 또 지난 8월 12일 고용노동부는 기존 구직지원 프로그램(청년내일찾기패키지, 前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들에게 구직지원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음. 기존 고용노동부 사업(취업성공패키지)은 1단계 취업활동계획 수립, 2단계 직업훈련, 3단계 동행면접 순으로 이뤄지는데, 1단계(최대 20만~25만원)와 2단계(6개월간 월 40만원)에는 취업수당을 주고 있지만 3단계 지원책은 없었던 상태였기 때문임.

-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는 계층이나 연령뿐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임. 그러나 청년 당사자들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긍정적 의견이 더 많은 상황임.¹⁾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지급 발표(‘16.8.3) 이후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16.8.3)과 ‘직권취소’(‘16.8.4) 그리고 서울시의 직권취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16.8.19)등으로 정책 갈등 심화된 상태임. 이 과정에서 청년당사자들의 절망과 혼란은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임. 최근 연구나 논의(오민홍, 2016)에서도 청년고용 보조금이나 지원이 고용

* 이 글은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주최 토론회(2016.9.20.) 발표를 위해 필자의 기존 원고(2016.8.1., 2016.9.5)를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1) 지난 7월 21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업체(엠브레인)에 의뢰한 결과, 전국의 청년(19세~29세, 1,000명)들은 서울시 청년수당에 ‘찬성’(53%)이 ‘반대’(21.%)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안정과 취업률 제고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음.

- 서울시는 2015년 11월 서울시 청년지원활동 사업계획을 발표한 이후, 복지부와 논의 과정('16.1.7.~6.30) 속에 애초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청년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수당을 3천명에게 6개월간(월 50만원)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월 3일 1차로 청년수당을 2,859명(약정 동의자)에게 지급한 상태임.²⁾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부터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면접과 구직활동 비용을 별도의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방안은 취업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한 형태임. 고용노동부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약 24,000명을 뽑아 정장 대여료와 사진촬영비 등 면접비용, 원거리 이동 시 숙박비와 교통비를 현금(실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과연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서비스(취성패 3단계 참여자)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과 큰 차이가 있는가? 만약 정부 논리대로 '차이'라면 기존 취업 프로그램 대상자 중 선정한다는 것 정도임.

[표1]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서울시, 경기도)의 청년고용정책 지원사업 비교

	사업 및 예산	대 상	선정기준	지원금	사용가능
고용노동부('16.9)	청년내일찾기패키지(前 취성패) * 청년희망재단 기금 활용(1,438억)	전국 34세 이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취업취약계층	고용노동부 취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 한정 (구직의지자)	3단계 수당 추가 월 20만원(실비) (최대 3개월 60만원)	면접비용, 구직활동 위한 숙박비, 교통비, 정장 대여 및 사진촬영 등
서울시('16.8)	청년보장제 청년활동지원사업 * 서울시 예산	19~29세 청년 서울 1년 거주자	활동지원계획서 제출자 취업자 중 단시간 근로(30시간 미만) 미취업기간(6개월) 중위소득 60% 이하 부양가족 수 등	월 50만원(현금) (최대 6개월, 300만원)	구직 활동 각종 학원·자격증·스터디 비용, 자기진로 모색 및 역량강화 비용 등
경기도('17)	청년구직지원금 * 경기도 예산	19~34세 청년 (기타 사항 미정)	저소득층 장기 미취업자 등	미정	미정

* 주 : 1) 고용노동부의 청년 구직 수당 추가(3단계) 지원 대상자 모두에게 60만원을 주진 못할 것으로 보임. 24,000명에게 최대 60만원을 주려면 한 해 144억원이 필요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올해 필요 경비로 절반 수준인 74억원 정도로 발표했고, 이 금액은 한 사람에게 평균 30만원 정도 가능한 금액임.
2) 경기도 '구직청년구직지원금' 적용대상은 저소득 청년(만 19세~34세)의 저소득층 및 장기미취업 청년임. 적용대상과 지급기간 및 금액 등은 미정이나 대체로 서울시와 비슷한 내용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저소득층 청년 지원 대상은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고 있는 11만명

2) 서울시는 2016년 7월 지원신청('16년 7월 4일~15일, 6,309명)과 선정('16년 7월 29일, 선정심사위원 24명, 3,000명) 등 마치고 8월 대상자 3천명 중 약 2,831명에게 1차 지급한 상태임.

의 21.8% 정도이며, 구체적으로는 저소득 청년 참여자의 30%, 일반 청년 참여자의 10%를 지원하는 것임. 문제는 지원 비용이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며, 기존 정부 예산이 아닌 별도의 제3의 기관의 기금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한시적 사업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 기존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지원성격을 갖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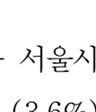
1단계 (3주~1개월)		2단계 (8개월)		3단계 (3개월)		취업성공 시 성공수당(I 유형) (100만원)
서비스	취업상담,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서비스	직업훈련 (200~300만원), 인턴, 창업 지원 등	서비스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수당	최대 20(II형)만원, 25만원(I형) 지원	수당	훈련수당 월 40만원(6개월)	수당	취업준비과정에서 지원 無	

* I유형: 기초생활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자, 기타 취업취약계층(위기청소년, 북한이탈주민 등) 등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로 직업훈련 자부담(10~30%) 면제, 수당 우대(참여수당 25만원, 취업성공수당 100만원) 지원

** II유형: 청년(18~34세)* 및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35~64세) 대상

자료 : <고용노동부-청년희망재단 공동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 지원 협력방안>(2016.8.12.)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배경

숫자로 본 대한민국 청년층	
 대학	70.8% 85100000원 <small>대학진학률(교육부 통계) 1980년 27.2% → 1990년 33.2% → 2008년 83.8% → 2015년 70.8%</small> 4년제 대학 다니는 데 드는 총비용 <small>(유기홍 의원실, 2015년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small>
 취업	64.0% 923000명 <small>신규채용 청년(15~29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 2015년 8월 기준, 2007년은 54.1%(한국노동연구원)</small> 청년 니트(15~29살, 일하지 않으면서 구직 의사도 없는 청년들) <small>2015년 1~9월 평균(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 연구위원)</small>
 부채	15060000원 <small>30살 미만 가구주 가구 평균 부채 전년 대비 25만원(1.7%) 증가(통계청,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small>
 부양	80.6명 <small>2060년 노년부양비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2015년은 17.9명(통계청)</small>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6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10.3%)이 전체 실업률(3.6%)의 세 배 남짓 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겪는 고통과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사회정책적 지향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기존의 전통적인 노동시장 지표인 취업률이나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은 청년 상황을 파악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음. 예를 들면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취업준비, 진학준비, 학원 수당 등)로 분류되

므로, 실제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함. ‘학교에서 직장으로’이여지는 전통적인 표준화된 노동시장 및 고용모델은 복잡한 청년 고용상황을 반영하지 하기 때문임. 특히 전 세계적으로 20대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청년고용 문제는 소위 ‘청년니트’(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연동되어 있음.

[표2]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 니트 규모(2015년, 단위: 천명, %)³⁾

	15-19세	20-24세	25-29세	계 (구성비)
인구	3,112	3,081	3,293	9,486 (100.0)
재학	2,756	1,250	334	4,340 (45.8)
비재학	356	1,831	2,959	5,146 (54.2)
취업	101	1,121	2,159	3,380 (35.6)
실업(A)	15	136	184	335 (3.5)
비경제활동인구(B)	241	574	616	1,430 (15.1)
◦ 잠재 경제활동인구(C)	20	246	274	540 (5.7)
◦ 순수 비경제활동인구(D)	221	328	341	890 (9.4)
청년 NEET (A + B)	256	710	752	1765 (18.6)
청년 구직 NEET (A + C)	35	382	525	875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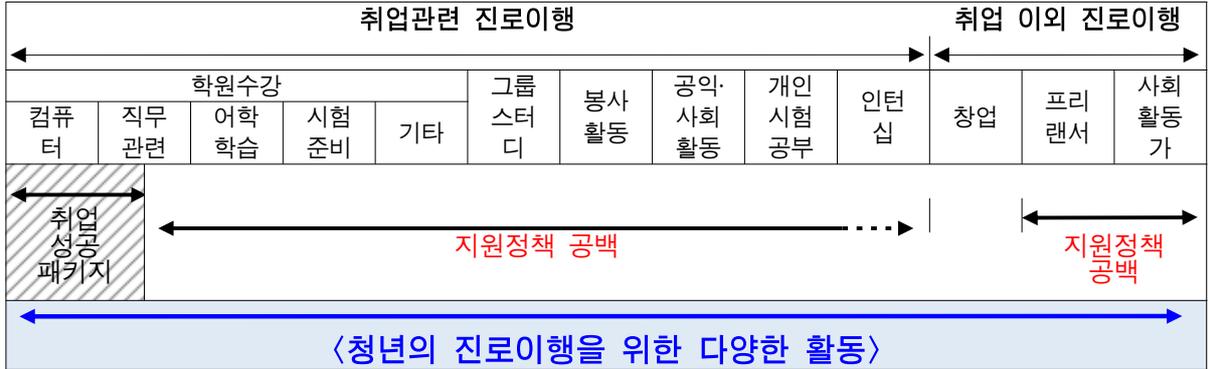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니트 실태(이태수, 2016: 이병희, 2016의 내용을 필자 재구성).

* 주 : **청년니트** (A + B) 18.6%(176만5천명) **구직 청년니트** (A + C) 9.4%(109만7천명)

- 노동시장 영역에서 ‘니트’는 미취업자 중 정규교육과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데, 청년 니트(NEET)는 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실업(Unemployed)과 비경제활동(Inactive)으로 구분 할 수 있음. 2015년 기준으로 **청년니트 규모는 18.6%**(176만명, 통계청 2015)이며, 실업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제외할 경우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니트**’ 규모만 하더라도 **9.4%**(109만명)이나 됨([표2]). 니트족은 영국에서 1980년대 ‘제로상태’(Status Zero)라는 용어가 만들어지면서 등장한 말임. 현재 사회적 논란의 핵심인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구직을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 상황에 기인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년 즉, 니트와 같은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실업부조 성격의 사회정책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서울시 청년보장제도는 ①_청년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만든 정책(이해당사자 접근 share holder)이라는 점, ②_지자체 차원의 청년고용과 복지라는 종합적인 사회정책의 성격(total policy value)이라는 점, ③_구직 활동 프로그램 참여자 즉, 직업훈련이나 구직 프로그램 참여자 이외의 대상을 포괄한다는 점, ④_기존 고용보험(실업급여, 수당)에서 배제된 집단 즉,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보완과 포괄적 노동시장의 제도적 확대(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임.⁴⁾

3) 국제노동기구(ILO)는 ‘니트’(NEET)를 실업과 비경제활동 이외에 ㉠전통적 의미 장기 혹은 단기 실업자, ㉡구직 불가능자(젊은 간병인, 부양가족 청년, 아프거나 장애청년), ㉢사회적 단절자(일자리 및 교육 받으려하지 않는자), ㉣기회 탐색자(적극적 구직훈련 기회 찾는자), ㉤자발적 니트족(여행, 예술, 음악, 독학 등 기타 활동자)으로 구분하기도 함.



□ 청년들에게 우선권을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2013년 논의된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에서 출발한 것임. OECD와 EU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데 각 개인이 받는 학교 교육의 기간과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상의 특성 등 청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청년기 겪는 장기간 실업 경험이 청년들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에서 청년보장제도가 모색되었음.
- 청년보장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 검토되고 있고, 지난 2013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2017년 전국적으로 보편화하기로 결정했음. 2016년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된 주 35시간제 변경 등이 포함된 프랑스 노동법 개정 내용 중 청년보장법이 포함되어 있음. 법안 내용은 청년들의 직업교육, 일자리 접근 등이 가능한 직업교육이며, 2017년 전국가적으로 확산한다는 것임. 프랑스 청년보장제(De quoi s'agit-il)는 고용부가 지역미션(mission locale)을 통해 전개하는 조치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층인 16세~25세 사이의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실시하는 종합적인 제도를 의미함.

4) 서울시 청년보장제는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정('15.1.2)에 근거하여, 청년에게 좋은 일 경험과 경력형성을 지원 하는 '①청년뉴딜일자리'를 개선하여 2천명으로 확대하고, '②청년활동지원' 정책을 신규로 도입하여 미취업 청년의 다양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③청년공공주택'과 '④청년공유공간'를 확대함으로써 서울시가 청년의 일자리·설자리·살자리·놀자리라는 4가지 종합적인 고용과 복지의 사회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모색된 것임.

Redonner la priorité à la jeunesse

La Garantie jeunes

Mis à jour le 12 mai 2016 - Projet porté par Myriam El Khomri, Patrick Kanner, Clotilde Valter

Pour les jeunes de 16-25 ans en situation de grande vulnérabilité sur le marché du travail, le Gouvernement a mis en place la Garantie jeunes. Un dispositif donnant à ces jeunes la chance d'une intégration sociale et professionnelle grâce à un parcours intensif de formation et d'accès à l'emploi. Le projet de loi travail prévoit la généralisation du dispositif en 2017.



자료 : 프랑스 정부 공식 청년보장 안내 페이지(<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 2016년 8월 3일 접속

- 프랑스 청년보장제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직업적 통합 기회(일자리 접근, 및 직업고용 집중적인 과정 제공 포함)를 주는 조치로, 현재 교육 과정 혹은 직업 교육 과정에 속해 있지 않는 학력이 없거나 학력이 아주 낮은 청년들, 소득이 저소득대상 생활수당(RSA)의 최하위 수당을 넘지 않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함.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되어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임. 2017년 8월 현재 프랑스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에게 1년간 월 461유로(한국 55만원 수준)를 지급하고 있음. 2013년 처음 청년보장 논의가 시작되어 시범기간과 지역 확대 과정을 통해 2017년 이 조치의 보편화가 발표되었음.⁵⁾
-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으로 통칭되는 청년정책 및 지원프로그램의 쟁점을 살펴볼 것임.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이행기 청년 노동시장과 삶은 어떤 상황인가?(II장) **둘째**,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취업)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가?(III장) **셋째**, 만약 기존의 청년 고용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미흡할 경우, 국내외 상황과 비교하여 구직수당 혹은 청년수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IV장, V장), **넷째**, 현재 청년수당 논쟁과 연동되어 국회 ‘청년고용촉진특별법’(구직촉진수당, 청년활동취업지원금) 및 ‘고용보험법’(청년구직촉진수당)과 관련 입법 내용(VI결론)과 개선과제를 기술했음.

5)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랑스 정부 공식 안내 홈페이지 <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에서 확인 가능함.

II. 이행기 청년 노동시장과 상황 어떻게 볼 것인가?

□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청년정책 논의

- 전 세계적으로 자본의 이윤추구와 규제회피 경영전략으로 유연한 고용과 고용의 외부화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산업구조 변화'와 '서비스사회화'와 맞물려 불안정 고용, 비공식계약 및 고용, 복잡한 고용관계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음. 최근에는 기존 노동시장 고용규제가 적절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제기구(ILO, EU, OECD)의 실증적 증거와 논의들에서 확인되고 있음. 기존의 표준화된 고용관계(standard employer relationships, SER)나 표준고용계약(standard employer contact, SEC)은 오직 내부자들에게 한정된 도움만을 주고 있으며,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보편적 사회적 제도와 노동권 등의 다양한 정책적 보호로부터 벗어난 혹은 배제된 사회집단(층: 여성, 청년, 이주, 소수자, 장애인, 초단시간 노동자, 1인 자영업자 혹은 독립계약자)들이 존재하게 됨을 지적하는 것임.⁶⁾
- 한편 기존 청년 고용 및 삶과 관련된 연구나 논의는 대체로 4가지 정도로 간략히 제한적 수준에서 유형화 할 수 있음. 기존 청년 관련 몇몇 연구들은 △청년세대의 생활상 △노동시장 및 제도 △직업 이동 △청년 고용으로 구분 가능하며, 주요 함의는 아래와 같음. 첫째, 청년 세대의 생활상을 살펴본 선행연구(유계숙 외, 2014; 정민우 외, 2011)는 청년층 대학생의 생활 영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음. 특히 정민우 외(2011)는 청년 실업, 부동산 격차를 축으로 한 주거 불평등의 심화가 수도권 1인 가구 청년 세대가 고시원에서 살게 만드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음. 이 연구에 따르면 청년 세대 사이에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둘러싸고 계급 간 차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불안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둘째,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및 제도에 대한 연구는 청년 세대가 지닌 사회자본이 노동시장에서 직업성취에서 드러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최준호, 2007)와 노동시장 제도가 청년 세대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연구(류기락, 2012), 청년고용촉진지원금과 취업률 연구(오민홍, 2016) 등이 있음. 이들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화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기존의 믿음들과 달리, 노동시장에서 고용보호제도뿐만 아니라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적 안정망과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상호 작용하여 청년 고용 성과를 제고함. 최석현·양지윤·정희정(2016)의 연구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특성에 부합하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해 지방정부 역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6) 노동시장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는 '소득과 자원으로부터의 배제', '기초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노동시장으로부터의 배제',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 4가지 형태가 있음.

- 셋째, 노동시장에 진입한 청년 세대의 직업 이동에 대한 연구는 △청년들의 첫 구직 과정 및 이후 청년들의 직업 이동에 대한 연구 △세대 간, 세대 내 직업 이동에 대한 연구 △청년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자산(학력 등)이나 성별, 첫 직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일자리 (이동) 양상을 분석한 연구, △청년 세대 하향식 직업 이동을 다룬 연구 등이 있음.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서 저임금 고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가 심화되고 부정적인 노동시장 성과가 결합되며 청년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와 사업장 규모는 근로조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바, 저임금 및 불안정 고용계층을 위한 직업훈련 및 이직지원 등의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박성재 외, 2012).
- 넷째, 청년 고용의 특성과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청년 세대의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짚어내며, 청년 세대가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원인으로 △경기 둔화 국면으로 인한 전반적 노동수요 위축 △경력직 선호 고용관행의 지속 △노동시장 수요-공급의 미스매치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지속 등을 꼽았음(박진희, 2016). 이에 일부 청년층은 **구직활동기간을 연장하거나, 취업준비 혹은 니트(NEET) 선택 등 노동시장에서 퇴장하고 있고, 특히 4년제 대졸자의 취업사교육 경험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결국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취업과 삶과 연동된 사회적 지원제도가 우리 사회에서 이슈로 제기 되고 있는 것이고, 청년 문제는 기존 노동법률 위반문제만이 아니라, 소위 ‘열정페이’와 같은 노동시장 내 취업과 고용 전후의 노동시장과 이행노동시장 문제까지 지적되고 있기 때문임. 특히 우리 사회의 청년문제는 **노동시장 영역(고용)만이 아니라, 비노동시장 영역(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 문제점까지 포괄되어야 함.** 이와 같은 의미에서 청년정책은 단순 노동시장의 일자리나 교육훈련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정책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사회 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가속되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과 취업 문제 이외의 보편적인 노동시장과 사회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거나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된 집단(층)에 대해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할 제도적, 정책적 과제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임. 이는 기존과 다른 형태의 ‘**포괄적 노동시장제도**’나 ‘**보편적 사회보장제도**’의 접근과 도입을 의미함.⁷⁾ 전자는 주로 노동시장 일자리 창출과 유지 그리고 직업훈련 차원에서, 후자는 실업부조와 실업보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음. 기존 논의 중 후자의 차원에서 장지연·이병희·은수미·신동균(2011: 207)은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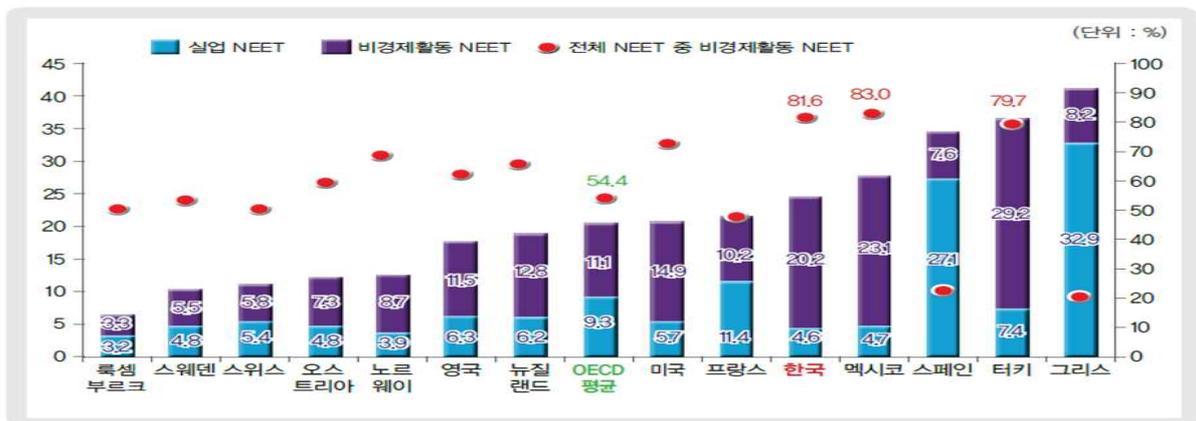
7) 최근 유럽의 몇몇 나라들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실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독일의 ‘교환을 통한 통합’ 프로그램(IDA, Integration durch Austausch), 영국 ‘청년계약 프로그램’(UK Youth Contract Program) 등이 소개되고 있음.

존의 고용보험제도만 가지고는 포괄할 수 없는 대상을 위한 고용안전망으로 실업부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 청년 노동시장의 변화와 특징, 그리고 정책

- 현재 청년실업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로 OECD나 EU와 같은 곳에서도 주요 핵심 고용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유럽연합 28개국의 청년 실업율이 10%대이나 스페인(21.7%)이나 그리스(22.1%)처럼 일부 국가들은 20%대를 웃도는 상황도 있음. 이들 국가들은 청년니트도 20.7%와 26.7%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두 배 0.5배 정도 높은 상황임. 한국과 가장 유사한 고용 지표 상황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이며, 프랑스는 고용율 46.4%, 실업율 10%, 니트 15.3% 정도이며, 네덜란드는 고용율 44%, 실업율 9.8%, 니트 13.7% 수준을 보이고 있음. 한편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몇몇 나라들의 실업률(전체, 청년)을 전국적 수준과 도시 수준과 비교하면 덴마크(코펜하겐)와 한국(서울)이 비슷한 통계적 수치를 보임.
-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은 ‘니트’(NEET,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문제의 접근이 보편적으로 제되고 있는 상황임. 청년니트(15세~29세)는 그리스, 터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전체 청년 인구의 18.5%(163만 명)에 이르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5세~29세, 대졸 이상의 고학력 니트 및 비경제활동 니트 비율이 높음. 국회입법조사처(2015)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취업준비 형태의 비경제활동 니트’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고용 보조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1] OECD 주요 나라별 청년니트 현황(2013)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2015)

[표3] 유럽 및 한국 청년(15~29세) 인구, 고용, 실업 지표(2014, 단위: 천명)

	전체 인구	고용율	실업율	니트
유럽 28개국 평균	87,158	46.4	10.0	15.3
프랑스	11,341	44.0	9.8	13.7
네덜란드	3,085	66.3	7.8	7.2
오스트리아	1,533	61.9	6.0	9.3
덴마크	1,058	59.8	7.7	7.3
독일	13,445	57.8	4.3	8.7
스웨덴	1,852	55.0	11.0	7.8
핀란드	971	52.3	9.8	11.8
포르투갈	1,672	39.0	13.3	14.6
스페인	7,152	33.1	21.7	20.7
이탈리아	9,246	28.3	13.1	26.2
그리스	1,730	27.1	22.1	26.7
한국	9,507	40.5	8.7	18.5

자료 : OECD,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2015. 한국 현황 추가하여 재구성.

[표4] 유럽 및 한국 전국 및 도시 차원의 실업율과 청년 실업율 비교(2013, 단위: %)

나라	도시	실업율		청년 실업율	
		전국	도시	전국	도시
독일	베를린	11.7	6.9	12.4	6.1
덴마크	코펜하겐	7.5	5.8	3.3	4.5
벨기에	플랑드르 겐트	12.3	7.5	25.5	17.7
노르웨이	베스트아그데르주 크리스티안	3.2	2.6	4.0	3.2
폴란드	포즈나인	4.1	13.4	9.1	18.6
스웨덴	스톡홀름	7.1	8.5	9.6	17.0
핀란드	반타	10.5	8.2	10.6	19.9
한국	서울	3.1	4.0	7.4	8.7

자료 :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에서 한국(서울) 전국 및 청년실업율 현황 추가하여 재구성.(유럽 청년 실업율 15-24세, 한국 청년 실업율 기준 15-29세)

- 우리나라 청년 고용율과 실업율은 지난 10년간 추이에서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첫째**, 지난 10년 사이 우리나라 **청년 고용율은 감소(0.9%p)하고, 실업율은 증가(2.6%p)** 했다는 것임.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청년 고용율은 2006년 43.6%에서 2016년 42.7%로 0.9%p 감소했으며, 이 시기 20대 초중반은 고용율 2.7%p 감소(2006년 49.8%→2016년 47.1%) 했음. 청년 실업율은 2006년 7.1%에서 2016년 9.7%로 2.6%p 증가했으며, 이 시기 10대와 20대 초중반과 후반 모두 비슷하게 증가했음.

[표3] 청년 고용률 10년간 변화 추이(2008.5~2016.5)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5~19세	6.6	6.1	6.3	5.2	6.2	6.2	7.0	6.1	7.3	7.9	7.6
20~24세	49.8	48.7	47.4	45.6	46.2	45.1	45.8	44.4	44.0	47.5	47.1
25~29세	68.8	68.7	68.6	69.0	69.5	70.1	70.3	69.6	69.7	68.5	70.5
전체	43.6	42.8	42.3	41.3	41.4	40.9	41.1	40.1	40.5	41.7	42.7

자료 : 통계청 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재분석

[표4] 청년 실업률 10년간 변화 추이(2008.5~2016.5)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5~19세	6.4	6.2	5.7	7.7	7.9	5.7	6.0	10.3	5.1	6.8	10.7
20~24세	8.7	8.7	8.5	9.2	7.3	7.9	9.9	8.2	10.1	10.1	10.1
25~29세	6.3	6.2	6.1	6.9	5.8	7.2	7.2	6.7	8.2	9.0	9.3
전체	7.1	7.0	6.9	7.6	6.4	7.3	8.0	7.4	8.7	9.3	9.7

자료 : 통계청 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재분석

[그림2] 서울지역 청년 고용률 및 실업률(201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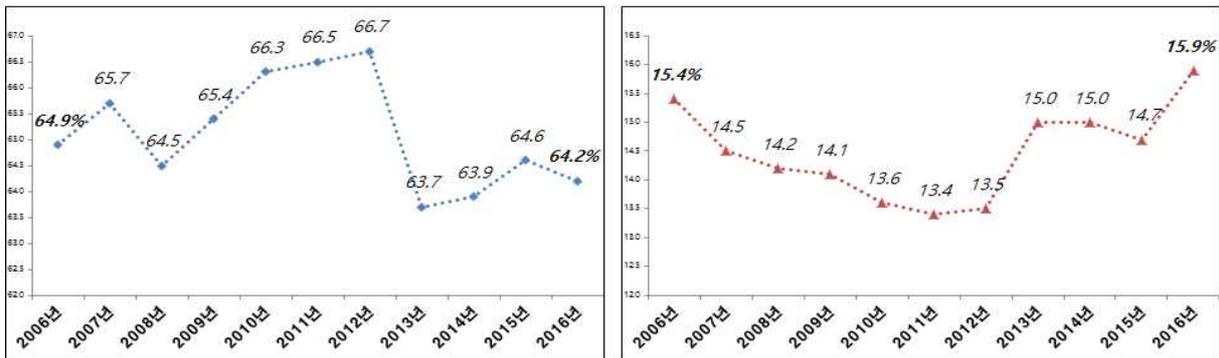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서울청 년도별 청년고용현황 자료 재구성(2016년은 1분기 현황)

–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에서 첫 취업(임금 노동자, 창업 포함) 소요 기간 문제도 이행기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임. 현재 청년들의 ‘첫 취업 소요 기간’은 지난 10년 사이 약 1개월 정도 감소(2006년 12개월 → 2016년 11개월) 한 상태임. 한편 지난 10년 사이 노동시장에서 임금노동자로 취업한 청년노동자 첫 취업(직장) 소요 기간 중 ‘6개월 미만 취업’ 비율은 0.7%p 감소(2006년 64.9% → 2016년 64.2%)했고, ‘2년 이상’의 장기간 취업 소요 기간은 비율은 0.4%p 증가(2006년 15.4% → 2016년 15.9%) 했음.

[그림3] 청년 임금노동자 취업 소요기간 및 개월 10년간 변화 추이(2006.5~2016.5, 단위:%)

A) 취업 6개월 미만 소요 B) 취업 2년 이상 소요



자료 : 통계청 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재분석

주 : 청년 첫 취업 소요기간은 임금, 비임금 근로자 포함이며, 취업 소요 개월 기간은 임금근로자 내부 비율

[그림4] 청년 임금노동자 직장 근속기간 10년간 변화 추이(2006.5~2016.5, 단위:%)



자료 : 통계청 국가포털 KOSIS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재분석

[표5] 청년 임금노동자 중 초단시간 근로 변화 추이(2005~2015, 단위: 천명, %)

	2005년				2015년			
	규모	비중1	전체	비중2	규모	비중1	전체	비중2
10대	15	6.5	238	6.2	59	8.4	257	23.0
20대	48	21.2	3,772	1.3	119	17.0	3,483	3.4
30대	53	23.6	4,516	1.2	48	6.8	4,804	1
40대	48	21.2	3,759	1.3	68	9.6	4,909	1.4
50대	22	9.5	1,869	1.2	63	9.0	3,909	1.6
60대	23	10.1	690	3.3	113	16.0	1,441	7.8
70대	18	8.0	124	14.6	234	33.2	514	45.5
전체	227	100.0	14,968	1.5	704	100.0	19,312	3.6

자료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5, 2015). 비중 1은 초단시간 구성비, 비중2는 특정별 대비 비중

- 한편 청년 노동시장은 불안정 고용이라는 이행기 노동시장 특성이 지난 10년 사이 확인됨. 청년들의 첫 직장 근속기간은 지난 10년 사이 지속적으로 하락(2006년 21개월 → 2016년 19개월, 2개월 감소)하고 있음. 특히 청년 중 첫 직장을 그만 둔 경우 근속기간은 약 3개월 정도 감소(2006년 18개월 → 2016년 15개월) 했음. 최근 청년 노동시장에 첫 직장이 비정규직일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이동이 21%에 불과한 상황(채창균·신동준·류지영, 2015:95)이며, 전체 노동시장의 근속기간이 짧다는 것은 직무 안정성(job stability)조차 열악한 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것임.

- 둘째,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시간제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20대 청년들이 시간제 일자리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음. 지난 2005년 초단시간 취업자 규모는 22만7천명(1.5%) 수준이었던 반면, 2015년 70만4천명(3.6%)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음. 문제는 초단시간 시간제 취업자 일자리 중 70대 이상 고령자 다음으로 20대 청년이 두 번째로 규모(11만9천명, 17%)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요하게 청년 노동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함([표5]).

[표6] 청년 초단시간 및 시간제 노동자의 노동실태와 문제점

노동시장 지표	노동조건 적용	초단시간 근로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로)		시간제 근로 (초단시간 노동자 제외)	
		15~29세	30세 이상	15~29세	30세 이상
고용기회 (채용, 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24.7%	58.6%	36.1%	44.2%
고용안정성 (근속기간, 갱신전환)	평균 근속년수	0.1년	1.5년	0.1년	1.4년
능력개발 (교육훈련)	교육훈련 경험	15.9%	41.6%	22.0%	32.4%
소득불평등 (저임금)	최저임금(5,580원) 미달자	46.2%	42.9%	52.8%	38.2%
	시간외 수당	9.5%	5.8%	13.1%	9.4%
	상여금	4.0%	11.8%	12.3%	17.4%
근로조건 (초단시간, 휴일휴가)	주 40시간 근로 실시	23.7%	56.9%	25.8%	41.4%
	유급휴가	0.8%	4.1%	6.0%	9.3%
사회보장 (사회보험, 안정망)	퇴직금	1.9%	6.6%	5.7%	14.3%
	국민연금	1.7%	4.8%	9.4%	13.3%
	건강보험	1.3%	7.1%	10.1%	17.5%
	고용보험	1.7%	9.2%	12.6%	1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5년 8월 부가조사 원자료 분석

[표7]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행 제법률 영역 적용 실태 여부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관련 법규 조항	적용	일부 적용	미적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계약서(제8조) 서면작성교부	○		
	임금 산정(제43조) [시간급 원칙]	○		
	초과 근로(제53조) [당사자 합의 시]	○		
	주휴수당(제55조)			○
	휴게시간(제54조 제1항)			○
	주휴일(제55조)			○
	연차유급휴가(제60조)			○
	생리휴가(제73조)	○		
일·가정 양립지원	출산전후 휴가(제74조)	○		
	육아시간(제75조)	○		
	육아휴직(제19조)			○
최저임금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19조 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13조), 발생 시 조치(14조), 고객에 의한 방지(제14조 2)	○		
최저임금법	법정최저임금(시급)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	○		
기간제법	2년 후 정규직 전환			○
사회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고용보험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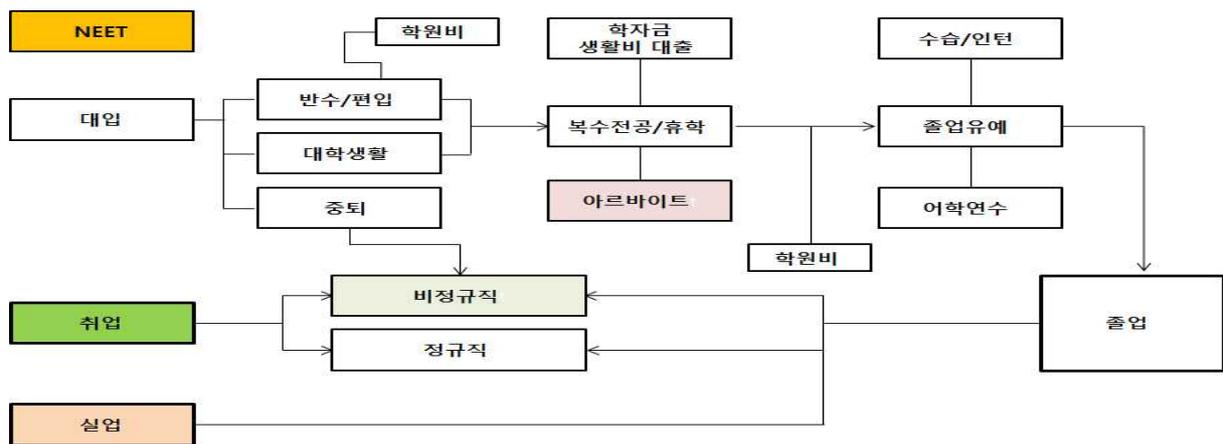
- 지난 10년 사이(2005년~2015년) 초단시간 근로 연령별 변화 추이를 보면, 2005년 당시에는 20대에서 40대가 대체로 각각 20% 비중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5년에는 70대(33.2%), 20대(17%), 60대(16%) 순으로 나타났음([표5]). 결국 지난 10년 사이 초단시간 근로에 20대 청년이 일정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임. 무엇보다 초단시간 근로의 문제점은 소득불평등(최저임금, 시간외 수당, 상여금), 근로조건(휴일휴가), 사회보장(퇴직금, 사회보험) 영역에서 거의 취약할 정도의 청년들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임([표6]).

- 결국 노동시장 내 청년층의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면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현행 우리나라 주요 제법률상 적용 제외의 사유로 인하여 보편적 노동기본권의 향유와 보호로부터 청년들이 배제 받고 있는 것임.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근로기준법(휴게시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과 일·가정 양립지원법(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제법(2년 이후 고용 의무; 정규직 전환), 사회보장법(퇴직금, 사회보험)에서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존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시장에서 고용된 자에 국한되기에,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에 대한 제도적 개선(부분 실업급여 혹은 실업부조) 요구가 있는 상황임([표7]).

□ 20대 청년의 삶과 고용문제

- 노동시장 주요 지표나 통계가 보여주는 청년고용문제처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차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층적으로 제기 되고 있음. 청년문제는 단순 고용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임. 이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inequality) 문제가 소득 영역에서의 빈부 격차를 넘어 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층적 영역에서 단단하게 맞물려 회복 불가능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임(신광영, 2013). 특히 불평등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해 ‘성취 지위’보다는 ‘귀속 지위’가 우세한 세습자본주의 징후마저 나타나고 있음. 최근 이와 같은 사회현상과 원인을 두고 ‘다중격차’(multiple disparities)로 개념화되기도 함.⁸⁾

[그림5] 20대 청년의 삶과 노동시장 이동 모형



자료 : 전병유·신진욱 외(2016:82)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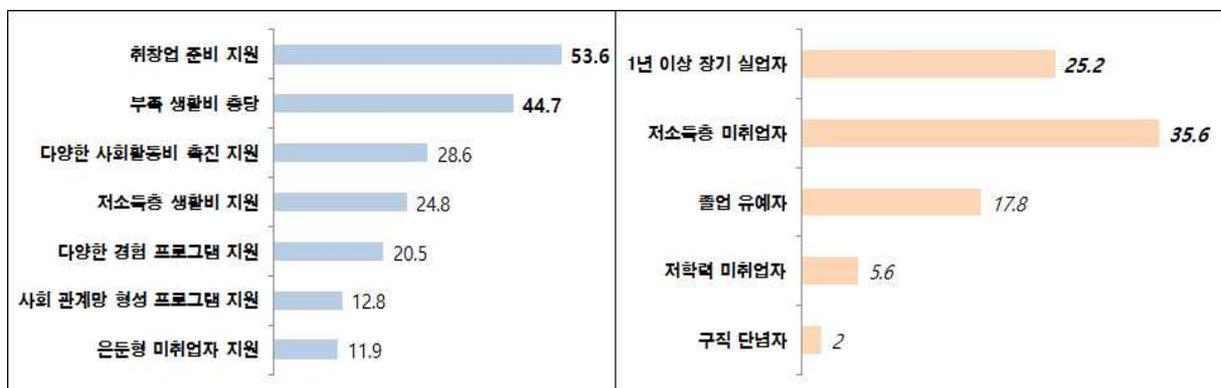
8) ‘다중격차’란 소득, 자산, 주거, 교육과 같은 개별 불평등 범주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어 중첩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임. 이 책에서 다중격차란 다양한 불평등 영역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강화시켜 불평등의 작동방식과는 다른 독립적인 내적 작동 방식을 갖춘 불평등의 특수한 형태임(전병유·신진욱 외, 2016:26).

- ‘다중격차 시대’에는 하나의 불평등 영역에서 낙오하면 다른 영역에서 회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며, 이때 ‘가정의 소득과 자산→사교육→대학진학→노동시장→소득’의 연결고리 중 어느 하나에서 이탈하면 다시 끼어들기 어려움. 문제는 한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전략으로는 다중격차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다중격차 시대의 최대 피해자는 청년(서울 청년: 29.2% 차지)들이며, 실제로 20~30대 청년층 정규직 비율은 매년 축소되고 있음(전병유·신진욱 외, 2016).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시는 청년종합정책(4가지 영역) 중 ‘청년활동지원사업’에 지원한 저소득 청년(중위 소득 60% 수준)을 위한 청년수당의 필요성을 사회정책 영역에서 제기한 것임. 지난 7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지원 신청서를 의미망 내용들이 잘 보여줌.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자 6,309명의 지원서의 ‘지원동기’, ‘활동 목표’, ‘활동 계획’ 각 영역별 주요 키워드는 △공부(4487건) △준비(3873건) △취업(2516건) △학원(3331건) △자격증(2938건) △스터디(2492건) △토익(2406건) 등의 순이었음.
- 결국 우리 사회의 미취업 혹은 취업준비 등을 위한 청년들에게 일자리 창출만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삶의 기회, 시간, 지원, 유지, 버팀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정책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들이 소외가 언론에 기사화 된 것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음. 몇몇 선정심사위원 의견을 보면, ‘청년의 무너져 있는 삶’, ‘안정적이지 않은 심리상태’, ‘미래 진로와 취업에 대한 빈곤한 상상력’들로 압축됨. 이러한 우리들의 20대 청년들의 빈곤한 상상력은 이후 사회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관론과 그만큼 경쟁에 내몰린 청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임.

[그림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사업 지원영역, 대상 의견조사 결과(2016)

A) 청년활동지원 수당 활용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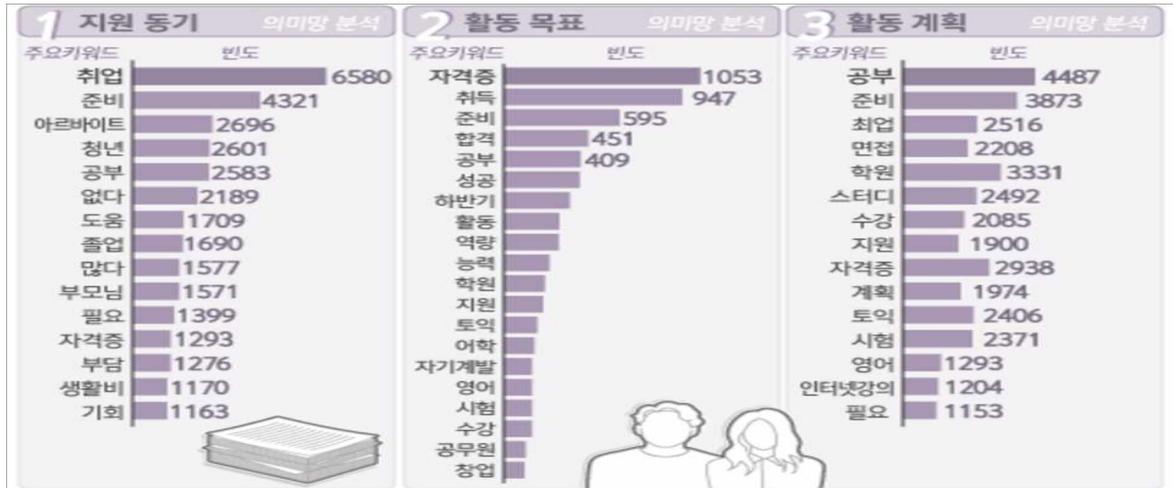
B) 청년활동지원 대상 적합 우선 순위 의견



자료 : 서울연구원(2016:9~11) 조사 결과 내용 재구성(N=713, 조사 시기: 2015년 12월, 만18-29세 서울지역 청년).

- 2016년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2016:5)는 서울지역 청년의 진로 모색과 방향에 대한 어두운 현실과 상황을 확인 할 수 있음. 서울지역 청년 진로유형의 88.5%는 취업경로이었고, 창업경로(8%), 프리랜서 경로(2.4%), 사회활동가 경로(1.1%) 순이었음. 서울지역 청년의 취업을 위한 활동(복수응답) 또한 △학원수강(어학, 자격증 68.3%, 기술습득 학원 48.2%), △그룹스터디(20.1%), △인턴십(35%), △봉사활동(11.9%), △사회활동(1.3%), △기타 공모전 준비(3.5%), △시험공부(1.7%)였음. 서울지역 청년의 취업 준비 위한 학원수강 활동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외국어’(54.7%)였고, 그룹스터디 활동 또한 가장 많은 비중이 ‘외국어’(23.6%)였음.
- 한편 서울지역 청년들은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위해 △취창업 지원(53.6%) △생활비지원(44.7%) △다양한 사회활동 촉진비용 지원(28.6%) △저소득 청년 생활 지원(24.8%) △ 다양한 사회경험 프로그램 지원(20.5%)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12.8%) △은둔형 미취업자 지원(11.9%)을 꼽고 있음. 또한 서울지역 청년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자격조건(1순위)으로 ‘저소득층 미취업자’(35.6%), ‘1년 이상 장기 실업자’(25.2%), ‘졸업 유예자’(17.8%), ‘저학력 미취업자’(5.6%), ‘구직 단념자’(2%) 순으로 뽑았음([그림6]).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신청자 주요 특징



자료 : 서울시 보도자료 및 주요 언론 기사 내용 재인용(2016.7.29)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심사위원 말말말

 “누구 하나만 기억나지 않을 만큼 다 어려운 사정” 사회복지사 ㄱ씨	 “대학 진학하고 싶다는 지원자도 탈락” 청년단체활동가 ㄴ씨	 “50만원 받으면 편의점 알바 한달에 80시간 덜 해도 된다고 계산” 청년창업가 ㄷ씨
 “교육비, 생활비 등 맞춤형 지원 필요” 시 산하기관 ㄹ씨	 “공무원, 경찰, 교사 시험 준비하거나 자격증, 토익 준비가 다” 노동전문가 ㄹ씨	 “그마저도 안 하면 불안하니까” 시 청년지원조직 ㅁ씨

자료 : 한겨레신문 <“청년들 생계 절박...취업훈련비·당장 생활비 급급”>(2016.8.3.)

서울시 청년수당 선정심사위원 2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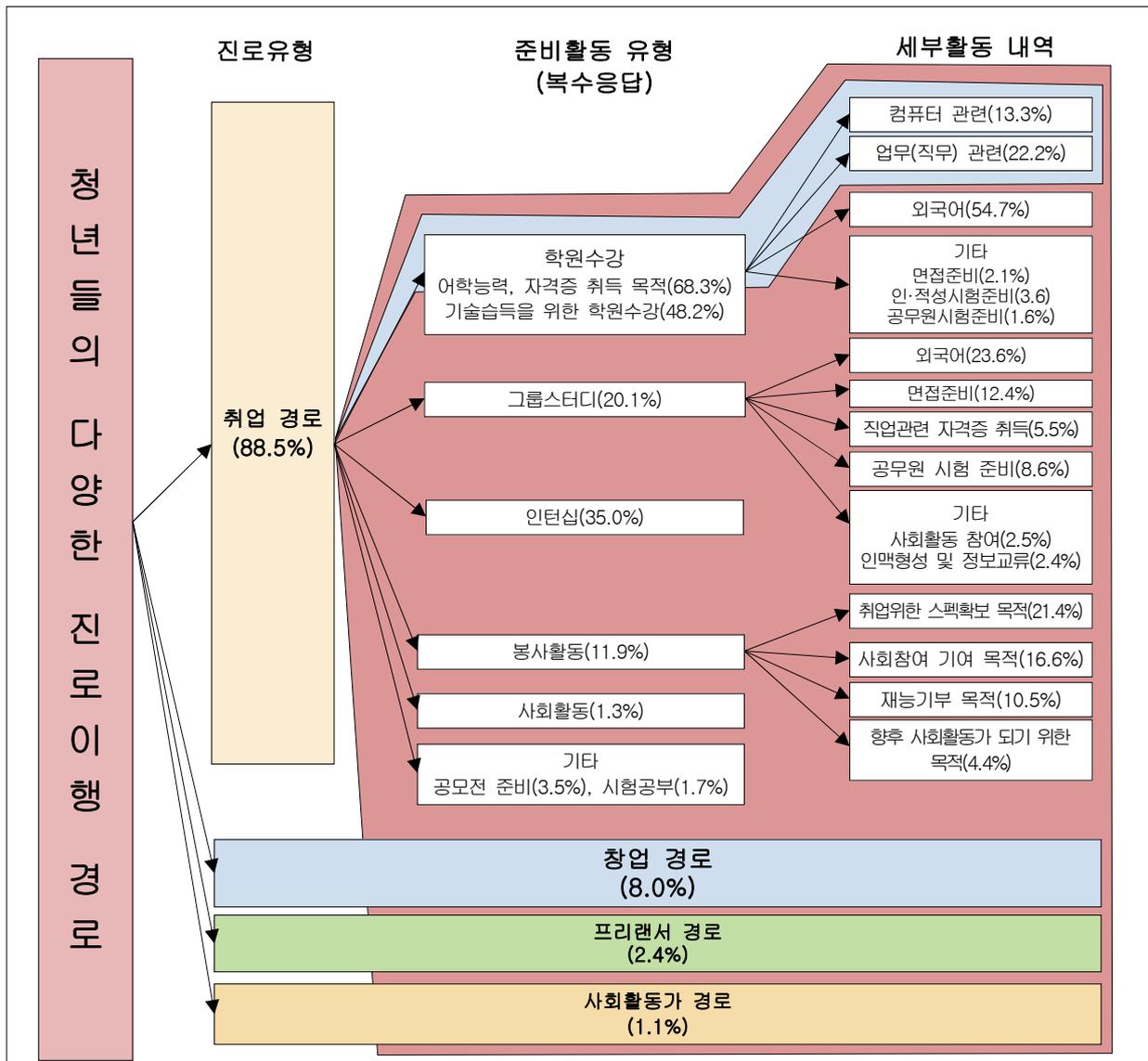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교생활을 포기하고 살다가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교육기회가 없어져버렸다는 지원자, 6개월 동안 50만원씩 받는다면 편의점에서 1달에 80시간 알바를 덜 해도 된다고 직접 계산해 적은 지원자도 있었다.”(선정심사위원 ㄷ씨, 32세)

“지원서 분량이 워낙 짧고 복지부의 수정 요구대로 취업의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80~90%의 지원자가 어학성적·자격증 등 스펙 쌓기에 집중하고 싶다거나, 공무원·경찰·교사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답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고 여겼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청년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회라는 방증이 아닌지, 정부가 앞장서 고민해야 할 지점이다” (선정심사위원 ㄹ씨, 43세)

서울시 청년수당 1호 ㄱ씨(30세, 1987년 출생)

- ° 3년 전 사범대학 졸업, 임용고시 준비 중(기간제 교사라도 목표)
- ° 지원서 활동계획(청년활동비 사용계획) 기입 내역 - 50만원 지출
: 직접적인 구직활동 비용 외 점심값, 차비 포함 8월 한국사 시험 접수비, 학원 등록비, 점심값, 대중교통비, 10~11월 독서실비, 대중교통비, 12월 2차 면접 준비, 기간제 교사 구직활동 등등
- ° 지원 사유 내용

“취업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지만, 배운 기술이 없어서 취업활동도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젠 도전이라는 단어가 설레기보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더 큼니다. 최근 경제가 안 좋아져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도 상황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취직에 성공해서 장남으로 부모님께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前 취업성공패키지 지원하는 취업준비활동
 서울시 청년수당 주요 고려해야할 취업준비활동

진로계획의 최종목표	응답률 (%)	취업을 위해 주로 하고 있는 활동 (취업 응답자)	응답률 (%)	학원수강의 주요내용(취업 응답자)	응답률(%)
취업	88.5	어학능력 향상, 자격증 취득 학원수강	68.3	외국어(토익, 회화, 제2외국어 등)	54.7
		기술습득을 위한 학원수강	48.2	업무(직무) 관련 컴퓨터 관련	22.2 13.3
창업	8.0	직무 경험을 쌓기 위한 인턴십	35.0	그룹스터디의 주요내용(취업 응답자)	응답률(%)
		취업준비를 위한 그룹스터디	20.1	취업 스펙 충족을 위한 외국어 면접 준비	23.6 12.4
프리랜서	2.4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봉사활동	11.9	봉사활동의 주요내용(취업 응답자)	응답률(%)
		공모전 준비	3.5	취업을 위해 필요한 스펙 확보 목적	21.4
사회활동가	1.1	시민운동, 정당·지역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활동	1.3	사회참여 및 기여 목적	16.6
				재능기부 목적 봉사활동 경험 없음	10.5 42.8

자료 : 서울연구원(2016)

III. 국내외 청년고용정책과 지원프로그램 실태와 쟁점

□ 국제기구와 정부의 청년고용 정책 흐름

- 일반적으로 청년고용정책은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흐름 속에서 판단 할 수 있음. 첫째, 국제노동기구(ILO)의 청년고용정책 핵심은 고용율과 실업 문제(unemployment) 해소 그리고 고용의 질(decent work) 향상으로 요약 됨. ILO는 청년실업의 문제 원인을 산업구조와 교육시스템에서 찾고 있음. 특히 청년실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소득(고용불안정 비정규 취업, 빈곤)과 비소득(주거, 복지, 교육, 의료)이라는 기준에서 검토하고 있음. ILO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다섯 가지 정책(①재정지원 통해 노동수요 증가 가능한 고용정책과 경제정책, ②교육제도와 노동시장 간 숙련 불일치 해소하고 학교 업무 현장으로의 이행 돕는 정책, ③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노동시장 정책, ④청년층의 창업과 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정책, ④전 세계 청년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피터 보켈, 2016:294).⁹⁾

[표8] 주요국 직업훈련 관련 청년고용 정책 비교

구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호주	한국
프로그램	청년뉴딜 프로그램	도제제도	이원화제도	일본형 이원화제도	도제훈련제도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18-24세	16세 이상	16세 이상	전문고교 재학생	일할 수 있는 연령 누구나	19-34세
사업주체	노동당 정부	미 노동부 주정부	고등교육기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연방정부 주정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내용특징	개별 상담가 통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거나 취업과 결별되도록 함	현장중심	현장훈련과 학교 수업병행하며 구가공인 시험을 거쳐 인증서 받음	직업교육보다는 직업훈련의 경력형성 조성을 촉진 받음	1:1 또는 1:多 특정기관에 모여 고용훈련 받고 실무기술 및 OJT는 각기 다른 기업에 가서 훈련 받음	(3단계 과정) °진로경력 설정 °직무능력 향상 °직장적력 증진 °집중취업알선

자료 : 김혜원·이영민, 「OECD 주요국가 청년 직업교육훈련 비교 분석, A/MATS, p.392에서 한국 필자 추가.

- 둘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청년고용정책 핵심은 청년실천계획(OECD Action Plan for Youth)을 채택하여 ‘현재의 청년실업문제 해결’과 ‘장기 청년고용전망 강화’ 두 가지 틀로 진행되고 있음. 현재의 청년실업해결 문제는 총수용 증대 및 일자리창출 확대 이외에도 실업청년층에 대한 적절한 소득 지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유지 및 확대, 저숙련 청년층 고용에 대한 수요측면이 장애요인 제거, 고용주들로 하여금 도제제도 및 인턴십 프로그램 지속 및 확대 장려임.¹⁰⁾

9) ILO 청년고용정책 시사점은 기존 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층’(youth left behind) 특히, 10대와 20대 학교 이탈자(early school leaver, OECD 11% ↔ 한국 약 16.6%) 문제였음.

10) 고용과 실업문제 해소라는 ①민간 보조금 일자리, ②구직 프로그램 지원(정보/상담 등 지원), ③교육훈련 경력제도 개선, ④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지원, ⑤청년 고용 보조금 + OJT + 기술 습득, 경력형성 인턴/직장체험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장기 청년고용전망 강화는 교육시스템 강화(노동시장 진입 준비), 직업훈련교육 역할 및 효과성 강화, 학교에서 일터로의 이동 지원, 고용기회 확대와 사회적 고립 타파의 노동시장 정책 및 제도 재설계 등임.

[표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고용정책 각 유형별 재정지출 규모(단위: 억원)¹¹⁾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체	69,521	134,440	104,773	106,260	112,088	127,633	132,459	139,748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LMP)	41,808	88,475	66,576	66,900	73,476	86,066	88,958	92,916
직접일자리	13,880	36,880	24,423	22,885	24,236	28,855	28,918	24,663
직업훈련	10,578	13,177	12,241	12,676	13,626	14,481	16,214	17,851
고용서비스	1,174	1,912	3,190	3,225	3,856	4,711	5,396	6,102
고용장려금	8,355	20,626	12,118	11,669	16,017	20,084	21,141	25,961
창업지원	7,821	15,879	14,604	16,446	15,741	17,935	17,289	18,339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PLMP)	27,714	45,965	38,196	39,360	38,612	41,566	43,500	46,832

자료 : 주무현(2016) 재구성

주 : 우리나라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의 GDP 대비 지출 비중은 0.75%로 OECD(1.32%)에 비해서 5.7%p 낮음.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비중은 0.45%(소극적 노동시장 정책 0.3%)로 OECD 0.78%보다 0.48%p 낮음(황선웅, 2016:13)

[표10] 지방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사업 및 예산 현황(단위: 개, 억원)

사업	전체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직접일자리
개수	2,099 (100.0%)	175 (8.3%)	184 (8.8%)	57 (2.7%)	95 (4.5%)	1,588 (75.5%)
예산	9,741 (100.0%)	560 (5.7%)	816 (8.4%)	608 (6.2%)	940 (9.6%)	6,817 (70.0%)

자료 : 주무현(2016), 황선웅(2016) 재구성(* 괄호 안은 적극적 일자리 사업 총 지출 대비 비중)

– 우리 정부도 청년고용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원’, ‘직업 훈련교육’에 관심을 두었고, 취업 성공패키지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 속에서 일부 보조금 지원 그리고 인턴 활성화(공공부문, 중소기업 등) 사업(고용노동부 예산 약 14조) 등이 진행되었음. 우리 정부는 지난 15년 사이에 약 18차례의 ‘청년 관련 정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대부분은 구직자의 취업 지원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대부분이었고, 정책 효과성이 불확실한 ‘단기성과 중심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과도하게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직접 일자리 정책의 사업과 예산 편중은 중앙정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임([표9], [표10]). EU나 OECD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직업교육훈련과 고용서비스 및 지원서비스 프로그램에 더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것과 상반된 것임.

11) 2003년 청년실업 종합대책(예산 5천3백억원, 사업 31개, 지원 인원 12만6천명)을 시작으로, 2004년 청년고용 촉진대책(예산 7천8백억원, 사업 53개, 지원인원 25만2천명), 2009년 청년고용 촉진대책(예산 1조3천억원, 사업 38개, 지원 인원 39만명), 2010년 청년 내일만들기(사업, 21개, 지원 인원 7천5백명) 등임(국회입법조사처, 2013).

-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 이후 총 9차례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했고, 2013년 12월에 이어 2014년 한 해에만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청년해외취업 촉진방안 등 세 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 7월에도 ‘청년고용절벽해소종합대책’을 또 내놓기도 했음.¹²⁾ 정부의 재정 지원 청년일자리사업(참여자 50% 청년)은 2016년 기준 2조 1,113억원이 편성되었고 14개 부처(청)에서 57개 사업이 시행 중임. 청년일자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청년고용대책까지 고려하면 20개 부처(청)에서 139개의 사업 및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¹³⁾ 그러나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전반적으로 청년층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의 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고, 상대적으로 ‘수요 측면’의 대책은 미미함. 특히 수요 측면의 청년고용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일명: 청년인턴)과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뉴딜 사업)이 대부분이고, 민간부문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캠페인 성격의 사업들로 구성된 특징이었음.

[표11] 박근혜 정부의 청년고용대책 발표 추진 현황

발표 시기	대책명	주요내용
2013.10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취약·핵심인력의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 대·중소기업 간 고용환경 격차 완화, 정보 미스매치해소 및 인력양성체계 구축
2013.12	청년맞춤형 일자리대책	노동시장 조기 진입, 보상시스템 개선, 창업지원
2014.4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대책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 고리 해소
2014.11	청년해외취업촉진방안	전략적 일자리 개척, 취업 단계별 지원 체계화, 해외취업 전달체계 개선
2014.12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	학교의 현장중심 교육과 취업역량 강화,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보상·거버넌스 구축
2015.6	인문계 전공자 취업촉진 방안	저학년부터 진로지도·역량향상 강화, 재학 중 융합기술교육·훈련 참여
2015.7	청년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	정년연장 등에 따른 단기 고용충격 완화,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 등 미스매치 해소, 청년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및 효율화
2015.11	청년해외취업촉진대책	해외진출 유망국가 및 직종 선정, 국가별·직종별 맞춤형 지원 강화, 풍부한 정보에 기반한 민간·공공 알선 강화
2016.4	청년·여성 취업연계 방안	17개 창조혁신센터 고용준별 청년채용의 날 개최, 청년취업내일공제(중소기업 인턴수료후 정규직 취업 2년 근속하며 300만원 저축 시 기업·정부 900만원지원으로 자산형성

- 게다가 현재의 청년고용정책은 청년 당사자들에게 인지도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정부 산하 연구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도 확인되고 있음¹⁴⁾.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해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

12) 청년실업은 구조적 실업(산업구조 전환), 마찰적 실업(정보 불확실, 미스매치), 경기적 실업(경기변동) 3가지 요인 이외에 다양한 요인(인구학적 요인, 정책적 요인, 주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구와 마찬가지로 고용 정책 중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정책 중 하나임.

13) 고용노동부(2015), 「2015 한권으로 통하는 청년고용정책」, 고용노동부.

14) 오호영(2016),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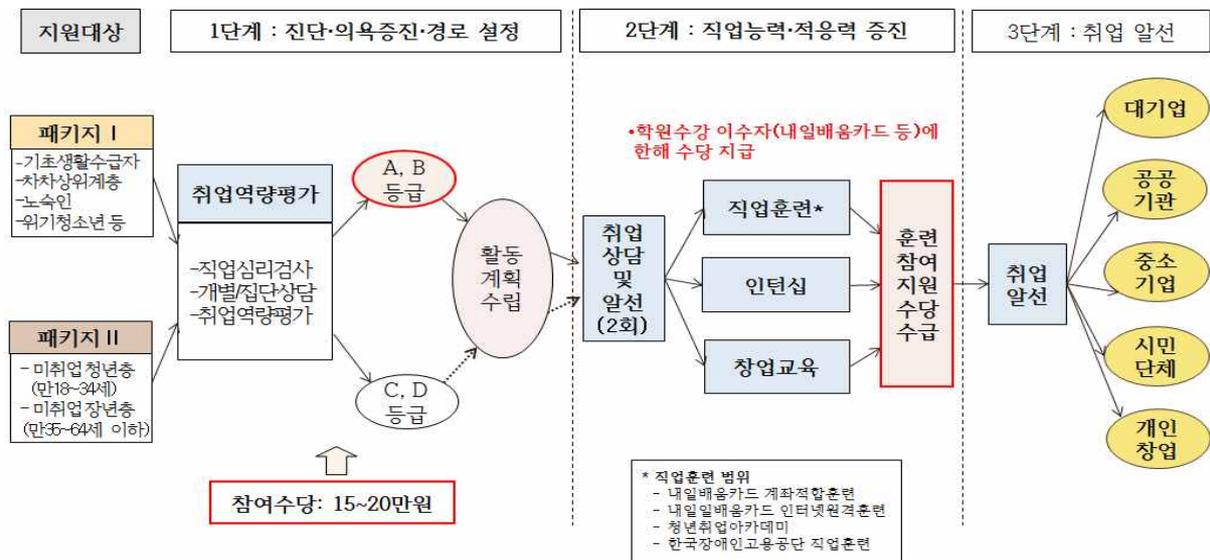
턴제, 청년취업 아카데미, 내일배움카드,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 등 8개 주요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정책 인지도는 대체로 평균 2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의 청년고용 정책 프로그램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청년을 상대로 “어느 하나라도 참여한 적이 있느냐”는 물은 정책 참여도 조사에서도 19.7%만이 “예”라고 답해 참여율이 저조했음.

- 정부의 청년정책별 참여 비율을 보면, 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 정책(0.5%)과 청년취업아카데미(1.5%)는 극히 미미했고, 비교적 알려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7.1%)와 내일배움카드(5.6%)조차도 참여 비율이 미흡했음. 다만, 해당 정책의 ‘취업에의 도움정도’는 내일배움카드(63.9%)와 고용노동부의 직업취업상담(61.3%)이 그나마 도움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48.9%)가 가장 낮은 상황임. 결국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참여도는 지난 2003년 이래 거의 해마다 청년고용대책을 발표해 2015년까지 모두 18차례나 쏟아낸 중앙정부 정책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것임.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프로그램 평가

- 지난 시기 정부의 청년정책들이 큰 효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청년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자리 창출과 지원,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지난 2015년을 기준으로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은 △취업지원(10개) △일자리창출지원(4개) △직업능력개발 지원(12개) 3개 영역, 총 26개 사업으로 구분됨. 정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관련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 중 중복사업 문제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 2번)와 비교해 볼 수 있음. 물론 2009년부터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청년내일찾기패키지’사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취업지원(10개)	일자리 창출 지원(4개)	직업능력개발 지원(12개)
1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 2 취업성공패키지 3 청년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 4 취업지원관 사업 5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6 해외 취업지원 7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 보급·확산 8 스펙초월 멘토스쿨 9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10 청년취업아카데미	11 사회적기업가 육성 12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1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4 중소기업 근속장려금	15 일학습병행제 16 기술·기능인력 양성 17 직업훈련교원 및 HRD 담당자 양성 18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19 내일배움카드 20 취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2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22 국가직무능력표준(NCS) 23 일-교육-훈련-자격 연계 고졸인력 양성 24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25 기업대학 26 산업단지 유관사업 패키지 지원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 청년 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취업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에 따라 최장 1년 기간 내에서 단계별·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초기 정부와 중복사업 문제로 논란이 된 것이기에 해당 사업을 평가 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 취업성공패키지는 2016년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사업으로 명칭 변경과 동시에 사업이 확대 되었으나 이전과 큰 변화는 확인하기 어려움. 청년구직프로그램의 하나인 이 사업은 3단계(1단계: 진단 및 경로설정 → 2단계: 직무능력향상 및 직장응용증진 → 3단계: 집중취업알선)로 되어 있고,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일정한 구직 수당(최대 20만원부터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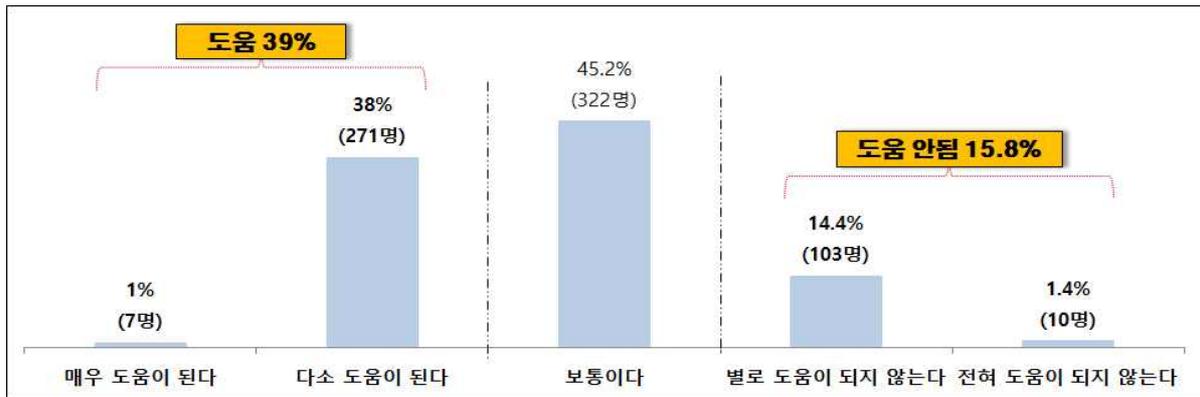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프로그램 ‘청년내일찾기패키지, 2016]

- 1단계 (진단·경로설정)
: 1:1 맞춤상담, 직업적성 및 흥미탐색, 직업심리검사, IAP수립, 참여수당(최대 20만원)
- 2단계 (직무능력향상 및 직장적응력증진)
: 청년취업아카데미,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내일배움카드(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인턴제, K-move 스쿨연계 해위취업, 훈련참여지원수당(월 최대 40만원)
- 3단계 (집중취업알선)
: 취업알선, 동행면접, 이력서클리닉, 면접클리닉, 취업상담수당 → [2016년 9월부터 월 20만원/최대 30만원의 취업 준비 관련 '실비' 지급 예정]

- 첫째, 2014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서울시 청년(18~34세) 대상자는 25,186명(전국 대비 21.8%)이었고, 2015년 참여자는 41,606명(전국 대비 21.5%)이었고, 2016년 6월 기준 30,648명(전국 대비 20.7%)이었음. 서울연구원(2016:7)의 취업성공패키지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사업이 이용자의 “취업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9% 정도(도움 안 됨

15.8%)였고, 만족도는 6.1점(10점 만점) 정도였음. 특히, 주된 불만요소는 교육·훈련 과정의 다양성 부족(43.3%), 커리큘럼 내용 불신(34.9%), 교육·훈련기관 선정 경직성(29.4%), 까다로운 통제(28.6%) 등이었음.

[그림7]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이용자 실태 도움정도(N=713)



자료 : 서울연구원의 이용자 실태 의견조사(2016.2) 재구성.

[표 12]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실적(단위 : 명, %)

연도	구분	참여자수	취업자수	중도 탈락자	미취업자	취업율	임금수준 150만원 이상자 비중	취업자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014	청년층	68,262	43,372	7,444	17,331	63.6%	46.7%	45.5%
	저소득층·특정취약계층	106,985	61,893	9,085	35,540	58.1%	34.3%	42.2%
	중장년층	418,498	10,854	671	5,934	58.8%	33.1%	43.6%

자료 : 국회예산안조정위원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분석》, 156쪽 재구성.

– 둘째,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은 취업 성공이나 고용의 지속성 등 사업 성과도 저조한 실정이며, 서울지역은 전체 평균보다 열악한 상황임.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는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 사업 4개 중 2개에 대해 감액을 권고했으며, 주로 사업 집행률과 성과가 떨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과다 편성했다는 것임. 노동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사업 중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실업자능력개발 사업이 감액조정 대상으로 분류되었는데,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청년취업자(취업율 63.6%) 중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45.5%를 밑돌고 있고, 월 평균 150만원 이상 비중은 46.7%에 불과 상황임([표12]). 서울지역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청년취업자(취업율 64.8%) 중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자 비율은 63% 수준이며, 월 평균 150만원 이상 비중은 46.4%(2015년 54.5%) 정도였음(권진호, 2016).

IV. 해외 청년보장제도와 청년수당 현황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청년보장제도 논의¹⁵⁾

- 2012년 기준으로 볼 때, OECD 회원국의 청년층(15~29세) 중 49%는 교육 중에 있으며, 나머지 51% 청년 중 36%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나, 7%는 실업 상태이고, 8%는 노동시장을 이탈한 비활동 상태임. 문제는 청년 니트의 비활동 및 장기 실업 상태는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인적 자본 형성 기회를 줄어든게 하고 국가 재정 수입을 줄어든게 됨. 또한 실업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실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음. 특히 청년니트 중 실업자보다는 비활동인구로 측정되는 그룹에 대한 보다 정교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¹⁶⁾ 특히 유럽연합은 전 세계적으로도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기에, 각 나라별 고용정책에서 EU 정책 이체의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런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에서 2013년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 논의가 출발한 것임. OECD와 EU는 청년들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는데 각 개인이 받는 학교 교육의 기간과 질적 수준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여건, 경제환경 및 인구구조상의 특성 등 청년들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 특히 청년기 겪는 장기간의 실업 경험이 청년들의 직업 경력을 비롯하여 미래소득 수준을 낮추게 되고, 개인들이 지니는 역량 수준, 고용가능성, 직업에 대한 만족도 및 행복감, 더 나아가 건강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에서 청년보장제도가 모색되었음.

-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특징은 ①청년 실업해소와 장기 실업 및 비활동경제인구로의 이탈방지, ②국가별 다양한 집행방식 채택(일자리, 계속교육, 도제교육, 실습기회의 제공과 다양한 진도지도와 상담 등 제공), ③고용주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임금 보조 지급, 일자리 보조금 지급, 직장내 훈련, 청년 임금보조금), ④노동시장 소외 및 취약계층 청년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홈리스 청년 특별 훈련, 가정 방문 훈련 및 실습 참여 등 동기 부여) 4가지로 요약 됨.

15) 이 파트는 OECD(2014), OECD(2015), 김문희(2015)의 내용과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홈페이지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임.

16) 캐나다 레지나 대학교는 밀착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유알게런티'(URGuarantee)를 운영하고 있는데, 졸업 후 6개월 이내 전공분야 미취업자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1년간 학비가 면제되며 4개의 옵션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유알게런티 홈페이지 참조할 것(<http://www.uregina.ca/urguarantee>)

-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는 이미 몇 년전부터 유사한 프로젝트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시행한 오스트리아(2008년), 핀란드(2013)의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임. 청년보장제도는 25세 미만의 모든 청년들이 정규 교육을 마치거나 실업한 후 4개월 내에 괜찮은 일자리나 지속적인 교육, 또는 견습 및 인턴십을 제공받도록 보장하는 것임.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의 총 운영비용은 연간 214억 유로로 추정되며, 다투족으로 인해 EU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1,539억원 유로인 점을 고려하면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만하다는 것임(Eurofound, 2012).

[표13] 유럽연합 27개국 중 각 나라별 청년보장제도 현황(2014기준, 단위: 백만 유로)

나라	청년보장제도 지역 추가재정	청년보장제도 특별배당액	나라	청년보장제도 지역 추가재정	청년보장제도 특별배당액
호주	NO	-	라투비아	YES	27.1
벨기에	YES	39.64	리투아니아	YES	29.69
불가리아	YES	51.56	룩셈부르크	NO	
크로아티아	YES	61.82	몰타	NO	
키프로스	YES	10.81	폴란드	YES	235.83
체코	YES	12.71	포르투갈	YES	150.2
덴마크	NO	-	루마니아	YES	99.02
에스토니아	NO	-	슬로바키아	YES	67.43
핀란드	NO	-	슬로베니아	YES	8.61
프랑스	YES	289.76	스페인	YES	881.44
독일	NO	-	스웨덴	YES	41.26
그리스	YES	-	네덜란드	NO	-
헝가리	YES	46.49	영국	YES	192.54
아일랜드	YES	63.66	이탈리아	YES	530.18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p.18~19.

- 유럽연합 이사회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까지 총 600억 유로(약 75조 1천 700억 원)의 예산을 청년고용프로그램에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청년니트를 주된 대상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청년보장(Youth Guarantee) 사업을 시작했음. 현재 청년보장제도는 유럽연합 각 나라별로 준비 정도에 따라 시행시점 차이가 있고, 2013년 당시 28개 회원국 중 9개 정도만이 종합적인 청년보장제도 계획을 수립(YGIPs)한 정도이며, 2014년 17개국으로 증가 했고, 현재는 다수의 국가들이 계획을 입안하고 있는 상태임. 물론 주요 나라별로 청년보장제도는 도입과 상황은 내적 차이가 있으며, 현재까지 청년보장제도를 위한 특별예산 배정도 나라별로 상이함.

□ 핀란드 사례 청년보장제도 사례

핀란드는 1990년대 이후부터 YG와 유사한 서비스를 청년들에게 제공. 현재 시행 되고 있는 YG는 2005년에 도입된 모델인 Social Guarantee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그 당시 고용 당국이 목표로 내세운 것은 청년 구직자가 실업자로 등록한 후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 핀란드는 2013년 이 제도를 YG로 확대 개편하고, 일자리 보장과 교육 보장을 통합하여 운영. 이에 따라 모든 25세 이하 청년과 30세 이하 의 최근 졸업자들에게 실업자로 등록된 3개월 이내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시보 일, 학업, 워크 쉐프 또는 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이 제도는 기초 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중등 교육, 직업 교육, 도제 교육, 워크숍 또는 다른 형태의 학습 장소나 재활 교육을 보장. 핀란드의 YG는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수단을 통해 청년고용을 증진. 교육 보장, 젊은 성인들을 위한 스킬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고용 및 경제적 개발 서비스

사도의 사회 및 의료 서비스를 포함한 재활 서비스, 청년층을 위한 워크숍 활동 기회 부여 등 개별화된 서비스

□ 벨기에 플랜더스 청년보장제도 사례

벨기에 플랜더스 지방에서 운영 중인 직장 내 훈련(individual vocational on-the-job training; Individuele Beroepsopleiding in Ondemening, 이하 IBO)는 직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으로 실제 시행에 있어서 작업장별로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훈련제도. IBO는 일반적으로 1~6개월간 지속되는데, 특정 그룹에게는 최고 12개월까지도 허용. IBO로 훈련생을 받은 고용주들은 훈련기간이 끝나면 고용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영구 취업 계약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최소한 훈련 기간만큼의 고정 고용 계약도 가능하도록 수정. VDAB(벨기에 공공고용서비스센터)는 고용주들에게 IBO를 안내하고 미래 직업을 갖기 위해 사내훈련을 받을 구직자 제안.

□ 노르웨이의 취약계층 청년보장 프로그램

노르웨이의 인구 6천 명의 소도시인 Tvedestrand 지역에는 15명으로 구성된 공공 고용서비스센터인 NAV가 있는데, 그 중 두 명의 직원이 청년고용을 지원 역할. NAV에 실직자로 등록된 청년들은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일자리를 찾기에 적합한 수준이 안 되는 경우. 지역 PES 직원들은 대도시의 직원들에 비해 구직자들에게 훨씬 더 적합한 접근법을 취함. 청년 구직자들은 한 명의 직원으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예를 들어 사회보장 혜택, 주택, 가족, 건강, 훈련 및 고용 지원 서비스 등 일체를 제공. 이 지역의 PES에서 청년층을 담당하는 2명의 직원들은 60명 정도의 청년 구직자들을 담당하는데, 필요할 경우 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등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일일 단위의 개별화된 지원. 특히, PES 직원들이 청년 구직자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개입하여 사회서비스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이 방식의 혁신적인 부분.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소규모 취약계층의 청년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지원으로 시행

[표14] OECD 3개 우선 지원 청년그룹

구분	지원 방안
NEET족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 및 장기 실업의 위험이 있는 그룹으로 유아 교육 및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을 줄일 수 있음. 동시에 세대간 빈곤을 타파하기 위한 광범위한 접근과 고립을 줄이기 위한 공간 계획 개선 및 지역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의 경제개발과 기업 유치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
노동시장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신규 진입자	학교교육은 마쳤으나 노동시장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 수요 측면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직장 이탈을 줄이고 적절한 승진제도를 통해 노동시장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 진입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음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대졸 졸업자	상시라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그룹으로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격기준보다 낮은 부문에 취업하거나 보다 나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 이동을 했을 수 있음. 보다 폭넓은 스킬과 경제개발 전략을 통해 이러한 수요-공급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대학 졸업자들로 하여금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자료 : OECD(2014:8).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 유럽연합 청년보장제도 정책적 시사점은 ①_국가 수준의 프로그램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에게도 시행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 ②_효과적인 청년보장제도 시행은 폭 넓은 파트너십을 필요로 하며, 단발식의 정책보다는 총체적인 접근법이 효과적이라는 것, ③_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 단순한 서비스로는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 ④_제도의 성공 여부는 개입 시기의 절적성에 달려 있다 것, ⑤_청년층 중 노동시장 여건이 어려운 시기에 학교를 떠나 노동시장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실업상

태에 있거나 노동력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비활동인구로 남아 있을 우려가 있기에, 타깃 그룹의 선정과 철저한 지원을 꼽고 있음(OECD, 2014).

- 유럽연합 소속의 여러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프랑스도 청년 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013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하여 구직활동과 직업교육 참여를 약속한 18세~26세 청년들에게 월 461.26유로(약 55만원)의 알로카시옹(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지역별로 청년 개인과 집단에 미션을 부여하고 다양한 직업경험과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청년 보장’(la Garantie jeunes)은 2015년 12월말까지 35,00명, 2016년 상반기 기준 46,00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음. 2016년 노동법 개정으로 프랑스 청년보장제도는 2017년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됨.

시범 1단계(2013년 가을) 선정 지방자치단체	시범 2단계(2014) 선정 지방자치단체
부슈 뒤 론(les Bouches du Rhône (마르세이유 Marseille) 프랑스 13지역 레위니옹(la Réunion) 프랑스 974지역 센스 생 드니(la Seine St Denis (동쪽 지구Est ensemble) 프랑스 93지역 보클뤼즈(le Vaucluse) 프랑스 84지역 로트 에 가론(le Lot-et-Garonne) 프랑스 47지역 퓌 드 돔(le Puy-de-Dôme 63지역)과 알리에 (l’Allier 03지역) 공동 피니스테르(le Finistère) 프랑스 29지역 외르(l’Eure) 프랑스 27지역 오드(l’Aude) 프랑스 11지역 보쥬(les Vosges) 프랑스 88지역	에손(l’Essonne) 프랑스 91지역 센마리팀(la Seine-Maritime) 프랑스 76지역 파드칼레(le Pas-de-Calais) 프랑스 62지역 도르도뉴(la Dordogne) 프랑스 24지역 일레빌렌느(l’Ille-et-Vilaine) 프랑스 35지역 사부아(la Savoie) 프랑스 73지역 우아즈(l’Oise) 프랑스 60지역 앵(l’Aisne) 프랑스 02지역 이제르(l’Isère) 프랑스 38지역 크루즈(la Creuse) 프랑스 23지역

- 프랑스 청년보장제도는 2013년 11월부터 10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15년 12월 72개 구역, 2016년 8월 현재 81개 구역으로 확대 시행 중임. 고용상태, 직업훈련 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 모두 속해 있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황(소득이 월 524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 있는 26세 미만의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음. 이는 대상 청년들을 고용 혹은 직업훈련 과정으로 이끌기 위하여, 개인 면담, 직업과 관련된 단체 아틀리에, 일자리나 실습 및 수련 제안에 대한 의무적 이행을 조건으로 1년 동안 관리 및 지원 내용을 담은 계약을 맺는 형태임.
- 프랑스 청년보장제도는 일상생활에 드는 비용(교통비, 거주비, 전화비 등)과 미래의 진로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월별 수당으로 461.26유로가 지급되었고, 한 차례 재계약이 가능함. 중간 조사에 의하면 1년 동안 청년보장제도에 해당되어 관리 및 지원을 받은 청년 2명 중 1명이 1년 후에도 취업상태이거나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제도의 효과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2014년 10개 시범사업 구역의 결과로 8,400명의 청년층이 계약을 맺었고 2017년까지 100,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음.¹⁷⁾ 한편 프랑스에는 다양한 사회적 수당들이 존재

하며, 2018년부터 청년층에 월 400유로(약 51만원)의 사회적 최소 수당(minima sociaux)을 지급하기로 발표했음.¹⁸⁾

프랑스 청년보장제도 시행과정 요약
<p>2013년 1월 21일 빈곤퇴치계획(Plan contre la pauvreté) 2013년 1월 21일 가난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프랑스 정부 부처간위원회가 열렸을 때 채택된 사회적 통합과 빈곤 퇴치 다년계획</p>
<p>2013년 10월 1일 시범 기간 (Expérimentation)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년 동안 청년 만명(10개 지역)을 대상으로 청년보장 안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법령 발표</p>
<p>2014년 7월 8일 대상 확대(Montée en charge) 프랑스 국무총리 마누엘 발스는 la grand conference sociale의 폐회식에서 청년보장제 확대 가속화 및 2017년 말까지 청년보장제의 수혜 대상을 10만명까지 올리겠다고 발표</p>
<p>62개 도(62 départements) 2014년 12월 1일 청년보장제의 시행지역을 62개도로 추가 확대 2015년 말까지 72개도로 확장 발표</p>
<p>1만명 혜택(2015년 1월) 청년보장제 시범실시 첫번째 해 만명의 혜택.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72개 지역에서 이 제도를 넓혀간 덕분에 이 조치가 시행된 2013년 이래 46,000명의 청년이 청년보장 혜택을 받았다. 2015년 12월 31일 현재 35,000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중</p>
<p>추가적 시행(2016년 2월 8일)과 평가(Evaluation) 미리암 엘 콤리 노동부 장관은 추가적으로 19개 데파르트망(프랑스 행정단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2016년 가을 이 제도에 관하여 학술위원회의 평가 결과가 나올 예정</p>
<p>전국적 보편화 시행 2017년 (Généralisation) 개정 노동법은 2017년 청년보장의 전국적 보편적 시행 예고</p>

자료 : 프랑스 정부 공식 청년보장 안내 페이지(<http://www.gouvernement.fr/action/la-garantie-jeunes>) 2016년 8월 3일 접속

17) L'Express, "Garantie jeunes : la moitié des jeunes en emploi ou formation après un an de

18) 마누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페이스북에 발표한 공보에서 "사회적 최소 수당에 대한 접근권을 어려움에 처한 젊은 층으로 확대하기 위해 '적극적 연대소득'(RSA)과 '성인 장애인 수당'(AAH), '노령자 연대 수당'(ASPA) 등 모든 종류의 사회적 최소 수당을 통합해 단일한 기초 보장 제도로 대체하는 전반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바 있음. 프랑스에서 현재 약 400만명이 사회적 최소 수당을 받고 있으나 신청 조건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실업부조제도의 기본 개편 방향은 10개로 나뉜 사회적 최소 수당을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거기에 구직 상태, 육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의 유무, 나이 등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보완하는 것임. 2010년 도입된 '적극적 청년 연대 소득'(RSA jeune actif)은 RSA를 25세 이하 청년층으로 확장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 2년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수당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이 까다로우 이 제도의 혜택을 보는 이는 5000명 정도에 불과함. 가장 최근인 2016년 2월 도입된 '활동 수당'(Prime d'activité)은 한 달에 1,500유로 이하(독신자 기준)를 버는 18세 이상 모든 청년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구매력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32,300명이 이 수당을 받고 있음.

[표15] 주요 해외 국가별 청년보장 및 수당 지급 나라 현황(2016.8)

국가	자유시장경제 모델(LMEs)		조정된 시장경제 모델(CMEs)			
	영국	호주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제도	청년 견습생 보조금 제도 (Apprenticeship Grant for Employers of 16-24 years old)	Youth Allowance(청년 보조금), Austudy(교육견습지원금)	Nuorisotakuu (Youth Guarantee, 청년보장제도)	Dagpenger (Daily pension, 실업급여)	En jobbgaranti for ungdommar (Job Guarantee for Youth Program, 청년보장제도)	Garanties jeunes (Youth Guarantee, 청년보장제도)
도입 시기	2012년 2월	1998년	2005년	1998년	2007년	2013년
지원 대상	16~24세에 해당하는 청년 견습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th Allowance) 15~25세 청년 중 구직 중이거나, 국가에서 인정한 교육 및 훈련 중이거나, 풀타임 학생 또는 주 30시간 이상 직업훈련 중인 자 • (Austudy) 26세 이상 국가인증 대학교육기관 재학 풀타임(한학기 4과목 이상 수강 또는 1주 30시간이상 근로) 학생 또는 직업 훈련 중인 청년 	25세 미만 모든 청년구직자 및 30세 미만 졸업자 * 단, 상기 지원 대상에 부합하며, 노동청에 실업자로 등록한 자 • 등록일로부터 3개월 간 지원 • 30세 미만 졸업자는 졸업 후 1년 이내에 실업자로 등록 필요	18세 이상 청년* 중 부모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이력서 작성 문제 또는 근무경험이 없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 교육수준이 낮아 직업이 없는 20세 이하,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한 20~24세, 근무시간이 감소한 30세 이하의 청년실업자로 분류하여 우선권 부여 ** 이력서 첨삭 및 인턴십 기회 제공	16세~24세 청년으로 최근 4개월 내 90일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서 PES(Public Employment Service)에 구직자로 등록된 자 * 월수입 524.68유로(약 66만원) 미만	18세 이상 26세 미만인 자로 고용상태나 직업훈련과정 및 학교교육 과정 모두에 속해 있지 않은 사회적 취약 청년(NEET족) * 월수입 524.68유로(약 66만원) 미만
지원 내용	중소기업이 16~24세의 청년을 견습생(apprentice)으로 채용할 경우 건당 1,500파운드(약 250만원) 한도(최대 5건)의 보조금 지원 * 위임된 지역(3개 지방)에 따라 보조금 한도 및 기준 상이 ** 정부 견습생 교육훈련(training) 비용 별도 지원(16~18세 : 훈련비 전액, 19~23세 : 50%, 24세 이상 : 50% 이내) - (소요예산) 2015/16 회계연도 기준 총 8,100만 파운드 (약 1,4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outh Allowance)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 여부 등에 따라 2주에 한번 20~48만원 지원(교육 및 훈련기간에 따라 수급기간 최대 1년 추가) • (Austudy) 소득 및 자산조사를 통해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에 한번 35~48만원 지원(교육 및 훈련기간에 따라 수급기간 최대 1년 추가) - (소요예산) 2015/16년 Youth Allowance는 약 8억3천4백만원, Austudy는 약 5억4천6백만원 	개별 상담을 통해 적성에 맞는 취업플랜 설계, 취업 목적 교육 참여 기회 보장, 취업(수습, 교정, 상담, 보조금 지원, 일자리) 알선* * 기본교육 이수자(25세 이하) 인턴십 또는 수습 장소 제공, 교육 제공 단체 지원금 지급, 일자리 제공 지자체, 민간회사 등에 임금보조금 지원(노동청에 사전 신고) ** 노동청이 제공하는 고용 지원제도 및 직업교육 서비스 참여를 전제로 구직활동을 막 시작할 졸업생 및 실업급여 탈락자(17~24세)에게 사회보장	작년 소득금액 기준 62.4% 금액의 지원금 수령 * 소득증빙 및 고용상태에 따라 급여 액수 결정(계좌입금) - (소요예산) 2015년 1.5백만달러 (약 16억7천7백만원)	교육 취업 상담, 구직활동 멘토링, 현장 실습, 비즈니스 Start-up 지원, 직업 훈련 및 교육(trainee jobs)* 견습 일자리 계약(training contract)**을 통한 구직활동 지원 + 월 785 달러 기본 보조금 지급*** * 직업 훈련 및 교육계약제도(trainee jobs)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한 20~24세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지자체 내 성인교육기관이나 야간고등학교(Folk high school)에서 교육 기회 제공	최대 1년간 집중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전제(상호의 무계약)로 월 461.72유로(약 58만원) 수당 지급** * 소그룹 교육(그룹별 6주간 노동법제 등 교육), 개별상담, 직업교육, 직업연수, 도제생활 등 직업 체험으로 구성 ** 교육 및 연수 기회에 응하지 않거나 취업지원센터와 정기적 연락(최소 월 1회)을 취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 중지 - (소요예산) 2015년 5만명 지원 164백만 유로(약 2,067억원) * 16년 말까지 10만명 지원

			<p>보험공단에서 노동시장보조금(Labour Market Subsidy) 제공 - (소요예산) 2013년 이 해 연간 6천만 유로 지원 (약 762억원) * 교육보장 예산 2천4백만 유로, 취업알선 예산 2천8백만 유로, 청년 워크샵 및 아웃리치 예산 8백만 유로로 구성 ** 상기 예산 중 약 50%는 교육문화부에, 여타 예산은 고용경제부, 사회보건 기관에 배정</p>		<p>** 견습 일자리 계약제도 (training contract)는 복지 부문이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분야에 청년실업자 고용 목적, 이 제도를 시행하는 고용주들에게 정부가 보조금 지급 (근무 75%와 훈련 25%이 결합된 제도) *** 소득비례 실업 보조금 (직장에 다니다가 실업한 경우): 전 직장 평균 월급의 80%(200일간)/ 그 후 100일은 70% (최대 실업 보조금은 일680 크로나(약 80 USD) 초과 불가) / 기본 보조금(취업 경력이 없는 경우): 월 약 6,600 크로나 (약 785 USD, 최장 300 일) - (소요예산) 18억9600만 크로나(5년, 약 2억 2600만 USD)</p>	(2.5~4억유로 소요 예상)
비고 차이	<p>영국의 청년보장제도는 청년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채용기업에게 간접 지원하는 고용정책 일환</p> <p>[기업 조건] • 종업원수 50인 이하 기업(전국 기준이며, 위임된 경우 다를 수 있음) • 최근 12개월 이내에 견습생을 채용한 기업이 아닐 것 • 해당 견습생이 13주의 견습(in-learning) 기간을 충족하였을 것</p>	<p>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조건이 국가에서 승인된 기관에서 교육 또는 직업훈련 중인자로 한정하는 등 직업훈련과 교육을 전제로 수당 지급</p>	<p>일정기간 직업교육 및 훈련, 개별 상담 등을 전제로 현금 지원이 아닌 고용지원서비스형태(일자리 또는 훈련 기회)로 지원되고 있음 * 현금으로 지급되는 노동시장보조금의 경우에도 노동청이 제공하는 고용지원 프로그램 및 직업교육 서비스 참여 전제</p>	<p>청년고용을 위한 별도의 지원제도가 없으며 다만, 30세 이하 청년층에게 실업급여 지원 우선권을 부여 하던 수준임.</p> <p>* 청년고용지원 등 별도의 제도는 없으며 본 제도를 통해서만 실업자 지원(16년 7월 기준, 본 제도의 수급자 중 약 28%가 청년 수급자)</p>	<p>현금지원방식 뿐 아니라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및 견습 일자리 계약제도 등의 참여를 의무조건으로 수당을 지급</p>	<p>서울시 청년수당과 같은 현금지원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또한 일정 수입이하 청년 니트족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은 유사, 상호의무계약(1년간 취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및 연수 참여 및 정기적 연락)을 전제로 수당 지급</p>

자료 : 김충환(2016:71~75쪽, 보건복지부 재외공간 조사자료) 재구성

□ 호주 청년수당

- 호주의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중 가장 중요한 수당인 실업수당은 수급대상자 유형에 따라 새출발수당 청년수당, 중고령자수당, 배우자수당, 미망인 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실업자 소득보장’이라는 일반조세 기반의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청년수당(Youth allowance), 교육지원금(Austudy), 구직수당(New-start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음. 호주의 청년수당은 ‘실업자소득지원(Income Support)’제도의 한 형태임.
- 호주 실업자소득지원제도는 일반조세에 의해 그 재원이 조달되며 취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퇴직근로자, 아동 또는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장애인 및 환자 등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리고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들에게 재력조사를 거쳐 정액(fixed amount)을 지불됨. 실제 지불되는 금액의 크기는 여타 소득과 연령, 혼인상태, 피부양 아동 수, 주택소유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결정 됨. 1991년 호주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소득지원은 크게 수당(allowance 혹은 급여benefits), 연금(pensions)으로 구분되며, 1995년부터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그 내용들이 변화되었음.
- 호주 청년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 실업부조는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 NSA)과 청년수당(Youth Allowance, YA)임. 새출발수당은 노령연금수급 연령 이하 21세 이상의 등록된 실업자에게 그리고 청년수당은 20세까지의 청년실업자 혹은 전일제(full-time)학생일 경우에는 25세까지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것임. 호주의 청년수당은 15세~25세의 학업·직업훈련·구직활동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함. 청년수당은 자산조사를 거쳐 결혼여부, 자녀유무, 독립여부 등에 따라 2주에 약 20~60만원씩 차등 지급함. 한편 호주의 교육지원금은 25세 이상의 학생을 위한 지원금이고, 구직수당은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1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자산조사를 거쳐 2주에 약 5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차등 지급됨.
- 호주 청년수당은 종전까지 실업, 질병, 재학 등 여러 관련 유형의 청년들에게 지급되던 다양한 수당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서 과거 실업상태에 있는 젊은이에 비해 재학 중인 젊은이가 수당 금액 등에 있어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있던 것을 시정하여 두 유형의 청년간에 수당지급에 관한 차이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또한 특별히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청년은 전일제 교육 내지는 훈련을 받는 것으로 취급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음. 이는 최근에 와서 상급학교에의 진학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학업과 취업을 병행하는 이의 비율이 높아지는 등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양상에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반영한 것임.

- 호주 청년수당은 활동조사(activity test)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며, 즉, 청년수당 수급자는 ① 구직활동을 수행하고 적절한 취업제의 시간제 또는 임시적 일자리 포함 있는 경우 이를 수락하거나 또는 ② 그들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다른 활동을 수행 하도록 요구됨. 이외에 ③ 실업자가 정부 기관과 체결한 취업 준비 약정서에서 규정한 특정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④ 직업훈련 자원봉사활동 자영업 개시 준비 등과 같은 정부기관이 허락한 활동을 수행하는 것도 활동조사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음. 단, 전일제 학생의 경우에는 위의 수급조건에 대한 의무사항이 적용되지 않음. 이밖에 최근 취업경력의 부족으로 해서 취업에 현저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활동조사 없이 실업수당이 지급됨.

V. 국내 지자체 청년지원정책과 사업 사례 - 서울시 청년수당, 성남시 청년배당

□ 부분기본소득 성격의 성남시 청년배당제도

- 현재 경기도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Youth Dividend)** 사업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2016년 기준) 모든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분기 12만5천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으로 **부분기본소득 성격**으로 볼 수 있음. 이는 유럽과 일부 나라들에서 도입 혹은 검토되고 있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한 형태임. 최근 스위스에서 전 국민에게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안이 국민투표(부결 76.9%)로 논의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제도임. 사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근로조건부과 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을 의미함.
- 무엇보다 기본소득은 소비와 투자의 내용과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기본소득은 주별, 월별, 분기별, 연별 등 정기적으로 제공되어 구매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본소득은 공적으로 통제되는 자원으로 정부가 지급하지만 반드시 국민국가일 필요는 없고, 지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국민국가 정치조직의 일부 단위에서 지급되거나 기금이 조성될 수도 있음.¹⁹⁾ 때문에 기본소득은 기존의 최소소득보장제도와 같이 가구단위로 가장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됨. 급여는 가구구성의 영향을 받으며 이를 위해 행정청은 가구구성을 조사할 권한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²⁰⁾

19) 필리페 반 빠레이스(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2010),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분배의 재구성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집, 21~56쪽.

20) 기본소득의 자격조건은 다소 포괄적일 수 있으나 비시민의 경우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나 현재 조세목적으로 규정한 거주조건 혹은 이 둘의 조합으로 제한할 수 있음. 연령 차원에서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고, 아동의

[표16] 주요 나라별 기본소득 도입과 검토 내용

국가	주요 도입 논의 내용
핀란드	중앙정부 기본소득 도입 검토. 2016년 하반기 실험 모델 결정 뒤, 2019년까지 실험 모델 시행 완전기본소득, 부분기본소득 등 4개 방안 검토 중(매달 800유로, 한국 100만원 상당 전 국민 지급 → 기존 복지 혜택 일원화 내용 검토)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등 지방정부가 논의 주도, 980달러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노동 강제하는 등 4가지 실 험군으로 나눠 기본소득과 노동참여율의 상관관계 등 분석 중
스위스	2016년 6월 기본소득 도입 여부 국민투표(2016.6.5 부결 76.9%) 국민투표안은 모든 성인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300만원 상당)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월 625 스위스 프랑(80만원 상당) 지급 내용
영국	노동당 중심으로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정책 구상 중, 싱크탱크인 왕립예술협회는 25-26살 사이 모든 시민한테 연 3,692파운드(600만원 상당) 또는 월 308파운드(50만원) 지급하는 기본소득안 제안
브라질	2004년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 브라질 시민과 5년 이상 브라질에 거주한 외국인 대상으로 지급 내용
미국 알래스카	석유 시추 통한 수익의 25%~50% 적립하는 영구 기금 조성. 1년 이상 알래스카 거주민에게 기금 운영 수익금 배당
나미비아	2007년~2009년 '오미타라'주민 930명, 매달 100나미비아 달러(15,000원) 지급
인도	2012~2014 마다야프라데시 주민 6,000여명, 매달 300루피(5,000원) 지급
한국	* 성남시 : 청년 배당(19세~24세) 성남 거주 미취업 청년(분기 12만5천원)

자료 : 김은표(국회입법조사처, 2016), 한겨레(2016.6.6.), 성남시 내용 필자 추가

-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목적은 “학업과 취업난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청년의 사회적 기여, 취업, 재산, 학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거주기간을 충족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성남시 청년배당은 기
본소득의 취지를 반영하듯 지급대상은 성남시 거주(3년)와 연령(19세~24세)의 조건만 충족하
면 됨. 이를 위해 성남시는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완료(‘15.3.2), 실행방안 연구
(‘15.9.11.), 실행방안 수립(‘15.9.17), 조례 제정(‘15.12.18) 등의 과정을 거쳤음.
- 성남시 청년배당 적용 대상자는 2016년 7월 기준 11,238명이며, 2016년 1월 20일 1분기 청년
배당 최초 지급했고, 현재 3/4분기까지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1/4분기 10,574명(13억2천
만원, 지급율 93.6%), 2/4분기 10,451명(13억원, 지급율 93.6%), 3/4분기 7,297명(지급율
68.9%) 정도 지급했음. 성남시 청년배당은 연간 예산 소요비용은 113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다만 현재 정부상대 소송 과정으로 애초 지급액의 50%(연간 50만원)를 지급하고 있음.

[표17] 경기도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현황(2016.8)

구 별	지급대상(명)	지 급 자(명)	지급율(%)	비고
1분기	11,300	10,574	93.6	1,322백만원
2분기	11,162	10,451	93.6	1,306백만원
3분기	11,238	7,297	68.9	1,405백만원(예정)

자료: 경기도 성남시 내부자료 재구성(2016.8.1.)

서열과는 독립적인 필요가 있음. 기본소득제도와 아동수당의 통합을 제안하는 다수의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차등화
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 최고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제안.

- **지급대상** : 성남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4세 청년
 ※ 2016년은 24세 시범지급 후 대상연령 확대 검토
 [16년 3/4분기 기준 수정구 2,488명, 중원구 3,193명, 분당구 5,557명]
- **지급금액** : 청년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단, 정부 소송(권한쟁의심판,대법원) 판결전에는 50%인 연 50만원 (분기별 125천원) 지급
 ※ 소송 승소 시 연 100만원으로 정상 지급
- **지급방법** : 성남사랑상품권
- **사 업 비** : 11,300백만원(시비 100% 자체사업)

– 한편 성남시는 청년배당 시행 이후 당사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모니터링(2016.4.30)을 시행 한바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2,866명(지급대상의 25.7%) 중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들과 비슷하게 ‘청년들의 소득활동 불안정’(월 소득 30만원 미만 36.2%, 정규직 21.7%)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 청년배당 신청자들은 ‘높은 청년배당 만족도’(96.3%)를 보였고, 청년배당 사용은 주로 △생활비 지출부담(1분기 40.9%, 2분기 37.5%), △자기계발비(1분기 17.9%, 2분기 19.1%), △문화여가비(1분기 11.1%, 2분기 9.8%)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자료 : 성남시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16.4)

□ 부분실업부조 성격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제도(청년수당)

-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중인 **청년보장제도(Youth Guarantee)**의 일환인 **청년수당(Youth allowance)**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9세(2016년 기준)의 저소득, 미취업(6개월), 취업자 중 불안정 취업자(주당 30시간 미만 근로)의 청년에게 연간 300만원(월 50만원)의 현금을 지원 하는 것으로 **부분실업부조 성격과 청년고용정책**의 패키지 영역 중 하나로 볼 수 있음. 이는 유럽 과 선진 나라들에서 도입되고 있는 부분 실업부조의 한 형태임.
- 앞의 글 2장과 4장에서 기술한 바대로 청년실업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OECD는 청년실천계획으로서 실업청년들에게 적절한 소득 지원을, EU는 청년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직업교육과 수당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권고로 채택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주요 선진 유럽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실업부조나 보편적 실업보험제도는 임노동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임. 이는 실업 및 미취업자들에

대한 일정한 소득지원 목적이, 기존 소득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수준의 보장에 있음을 의미함. 실업수당 등 소득지원은 수급자의 이전 취업경험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 복지국가들의 제도와 정책 설계의 정신임. 따라서 취업경력이 없는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도 실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소득지원은 기본적으로 중앙(연방)정부가 관할하며, 소득지원 조건수준 및 수급자 의무는 모든 주에 동일 적용되는 편임.

[표18] 주요 선진 국가들의 고용안전망 - 실업부조, 실업급여 유형

시장 국가	시장경제 유형	자유 시장경제 LMEs	조정된 시장경제 CMEs		
	국가별 유형	영미형	북유럽 스칸디나비아형	대륙 라인형	남유럽 지중해형
실업 보험 & 실업 부조	실업보험	캐나다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
	실업부조	뉴질랜드 호주		(일본)	
	실업부조 실업보험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보편적 실업보험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자료 : 장지연·이병화·은수미·신동균(2011: 211~213)의 내용을 단순하게 유형화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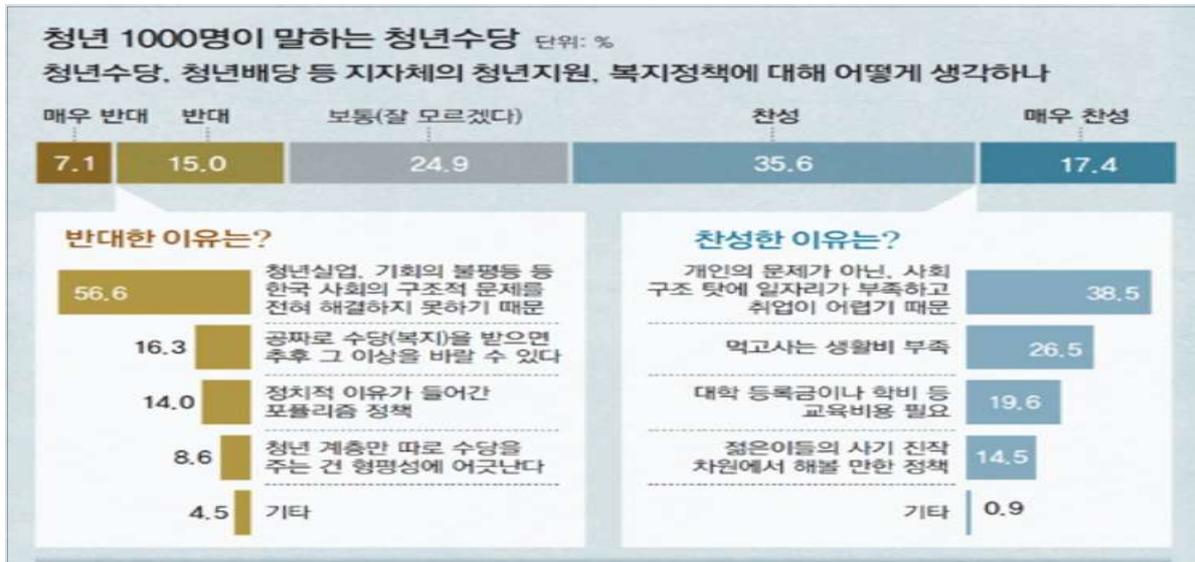
[표19] 서울시 청년보장제도의 4개 영역별 정책 현황(2016.3)

분 야	설 자리	일 자리	살 자리	놀 자리
핵심사업 (5개)	청년활동지원	뉴딜일자리	청년1인 가구 주거 희망두배 청년통장	활동 공간 조성
일반사업 (15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자 지원 등 3개 사업	·챌린지 1000프로젝트 등 8개 사업	·금융생활 지원 등 2개 사업	·청년허브지원 등 2개 사업
5년간 총 예산 (총 7,136억 원)	716억 원 (10.0%)	3,185억 원 (44.6%)	2,890억 원 (40.5%)	344억 원 (4.8%)

자료 : 서울시 내부자료 제인용(2016.3)

-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의 청년보장제도의 일환인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연령에 따른 무조건적인 수당 지급이 아니라, 청년의 구체적인 활동을 조건으로 하고 있음.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단독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서울형 청년보장에 포함되어 다른 정책들(일자리, 주거, 활동공간 등)과 유기적 연계 속에 통합적인 패키지의 하나로 작동하고 있음. 서울시의 청년정책 관련 4가지 영역은 향후 5년간 약 3천2백억원, 청년1인 주거 지원사업으로는 2천9백억원을 편성했고, 사업 규모 대비 일자리정책과 주거정책 비중이 높음. 정부의 청년 구직지원 프로그램과 비슷한 사업은 서울시의 경우 기술교육원,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목적은 “구직활동 등을 포기한 NEET 등 기존 취업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능동적인 진로 설계를 위해 각종 역량강화 및 진

로모색 등의 다양한 취·창업의 간접적 구직활동'을 포괄하며, 사회참여활동과 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활동' 등을 지원하는 포괄적 청년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포함)은 부분실업부조와 청년고용정책의 취지를 반영하듯 선정대상은 서울시 거주(1년)와 연령(19세~29세), 구직기간(6개월 미만) 및 취업근로시간(주당 30시간 미만), 소득(중위소득 60%)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상황임. 이를 위해 서울시는 조례 제정('14.12, 공포 '15.1) 이후 서울시 청년정책 재구성을 위한 기획 연구 실행('15.3.), 청년정책위원회 개최('15.3.) 및 분과별 TF운영('15.5.~6.), 서울청년주간 및 청년의회 개최('15. 7.13.~7.19. 2천여명), 서울청년의회 후속 포럼 개최('15.8.),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수립('15.11) 등 청년 당사자들과 정책 거버넌스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



자료 : 동아일보(2016.7.21.)

엠브레인 조사 : 조사시기 7월14일~17일, 조사대상 전국 1,000명(청년 19~29세), 신뢰도 95% 오차범위 ± 3.1%포인트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신청 대상자는 2016년 8월 기준 3,000명(신청자 6,309명 → 선정 심사 3,000명) 중 8월 3일 약정 동의자 2,859명이 1차 대상자가 됨.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 평균 나이는 26.4살, 가구 건강보험 평균 납부액은 직장 8만3011원(지역 7만920원)이고, 가구 소득으로 바꾸면 직장가입자는 268만원(지역가입자 207만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년들임. 서울시 청년수당의 연간 예산 소요 비용은 9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음. 다만 현재 정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 시정명령 이후 직권취소 등에 따른 서울시 법정 소송(대법원)으로 갈 경우 첫 사업 대상과 비용 등은 변화될 수 있음.

- **지급대상** : 서울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29세 청년 대상
 [선정기준 1차 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수, 미취업기간]

[선정기준 2차 정성평가 : 활동목표, 활동계획,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 구체성]

※ 제외대상

-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연간 300만원(매월 50만원)

※ 6개월 지급 원칙으로 하되 자격상실 시 지급 중지

※ 비금전적 지원 : 커뮤니티 지원,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 **지원범위** : 취·창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 (취.창업) 시험등록비 지원, 자격증 취득과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수강비,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지원, 비급여형 인턴활동 지원비 등
- (사회참여) 자원봉사, 공익활동, 도시재생, 지역협력 활동 등

· **지급방법** : 상호의무이행 협약에 따라 참가자의 지원신청서, 활동기록을 근거로 현금 지급
[활동기록 온라인플랫폼 등록 → 매니저 확인 → 지원금 지급]

· **사업비** : 9,000백만원(시비 100% 자체사업)

[표20] 중앙 및 지방정부 청년고용 지원정책 영역별 비교(2016.9.5.)

정부 구분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경기 성남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명칭	취업성공패키지(II) 청년층 [→ 청년내일찾기패키지]	청년활동지원사업 (Youth Guarantee)	청년구직지원금	청년배당 (Youth Dividend)
목적	근로지원, 근로빈곤층 자 구직의사 청년 취업지원	구직활동 및 사회참여 기 회 제공 통한 청년 자존 감 회복		청년의 인간다운 생활보 장
성격	취업 구직수당	부분 실업부조	부분실업부조, 구직수당	부분 기본소득
지원 대상	연령 만 18세~34세 구직자 ① 고졸이하 미취학 청년 ② 대졸이상 미취업 청년 ③ 최근 2년간 교육훈련도 에 참여한 청년(니트족). ④ 영세자영업자, 최저생 계비 250%이하의 가구원 으로 실업급여 수급종료 후 미취업자,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 한 자, 고용보험 가입이 없는 자 등	연령 만19~29세 ① 미취업자 ② 졸업 예정자 ③ 주 30시간 미만 근로 불안정노동자 미만 근로 시간 사회 밖 청년 약 50 만명 추정	연령 만19~29세 ① 장기 미취업자 ②?	연령 만19~24세
소득 확인	없음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94만원), 2인 가 구(160만원), 3인 가구 (206만원)	저소득층	없음
선정 방법	집중상담 및 직업심리검 사 등 실시, 검사결과 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 립자 '참여수당' 지급	구직활동, 공공사회활동 등 계획서 제출 → 선정 위원회 심사 선발	?	없음
지원 규모	'15년 30만명	'16년 3,000명 [8/3 기준 2,831명]	'17년 도입 발표 (2016.8.26)	'16년 11,238명 [2/4분기 10,574명]
지원 내용	[1단계] 상담·진단: 참여수 당 (식비·교통비 차원에서 최 대 1개월간 최대 20만원) [2단계] 직업능력개발: 훈 련참여지원수당(최대 6개 월가) [3단계] 취업성공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원(저소득층 한정, 3개월) → 월 20만원의 취업 준비 서비스 소요 비용 지원(월 20만원, 최 대 3개월, 28,000명 → 74억 : 청년희망재단 기 금 활용) (* 취업패 2014년 2,170 억원)	월 50만원 (최대 6개월 연간 300만 원) 현금 지급 (2016년 90억원 소요 예 정)		분기별 25만원 (최대 연간 100만원) 바우처·성격의 지역시장 상품권(성남사랑)
자기 부담	정부지원초과분 및 재료 비 자기부담, 훈련종류 따라 10~30%의 자기부 담 발생	없음		없음
지원 조건	진단 경로설정 → 직업훈 련·인턴사업 → 취업알선	1년 이상 거주 저소득 계 층 주 30시간 미만 근로시간		3년 이상 거주
기대 효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중 립적 취업지원정책으로 빈곤탈출 및 자립지원	비경제활동으로 숨어버린 구직포기자 등 활동지원, 불안정노 동자 사회활동 참가 지원		청년 복지향상과 취업역 량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 자료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취업방안 발표자료(2016.8.12.), 서울시 내부자료(2016.7), 경기도 언론 발표 자료 계구성
주 : 고용노동부 취업패 3단계 취업 서비스 지원 비용은 면접비용, 구직활동 위한 숙박비, 교통비, 정장 대여 및 사진촬영
등의 실비 지원임.

VI. 토론 및 논의 : 청년정책과 사회안전망의 답을 찾아가다!

□ 지방정부의 청년지원 정책 고민 살펴보기

- 서울시('16.8)나 경기도('17 도입 발표)의 청년지원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은 치열한 경쟁 과 힘든 삶에 고통 받는 많은 젊은이들을 좌절케 하는 것임. 특히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은 시정명령과 직권취소를 중앙 정부가 고용노동부 사업에는 이와 유사한 정책을 밝힌 것은 사회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 실업과 빈곤의 덫에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반문해 본다면, 중앙정부는 막연한 법적 기준과 반대만이 아니라 청년들에게 어떤 답변을 해줄 것인가 고민해야 함. 학교를 나와 미취업이라는 그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인간 존엄의 상실'로 각인되는 현실에서, 소위 '포퓰리즘'이나, '도덕적 해이' (복지식객)라는 수사를 붙일 상황이 아닐 정도로 절박한 청년들의 삶을 같이 공감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음.
- 첫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EU 다수의 나라 사례처럼 사회적 보호의 한 형태로서 시범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프랑스 청년보장제처럼 사업 평가, 보완 및 반영 등 절차적 정책 형성과정이 필요한 사업임.²¹⁾ 둘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보장제도'라는 패키지(4가지: 일자리 창출, 주거지원, 공간지원, 수당 및 교육 등 활동지원) 정책 중 하나라는 점을 확인해야 함. 셋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정책성과 평가 과정을 통해 경기도 도입 발표 사례처럼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되는 것이 공공행정이라는 국가 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임.²²⁾ 넷째, 현재 몇몇 혹은 일부 논의처럼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는 지점(수당의 부정사용, 중복 지원 등)은 다양한 모니터링 과정 속에서 보완과 시정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사항임.²³⁾
- 우리나라 청년의 삶과 현실은 '실업률' 10.3%(서울 12.3%), '청년 니트' 18.6%(176만5천명, 순

21) 최근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중앙일보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칼럼은 청년정책의 유럽과 한국의 차이를 잘 보여줌. 칼럼에서 그는 "한국처럼 청년세대에 잔혹한 나라가 없다. 바깥스를 업무보다 중시하는 프랑스는 청소년에게도 '휴가향유권'을 부여해 역사 명소 탐방, 체육활동, 영화·연극 관람용 '할인가드'를 제공한다. 이를하여 '여름 연대'다. 스포츠를 중시하는 영국은 취약계층과 청소년에게 각종 체육시설, 테니스, 볼링을 부담 없이 즐기도록 '여가여권(leisure passport)'을 발급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중앙일보, <송호근 칼럼> 한국 청년 잔혹사, 2016.8.9)

22)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존의 공급중심의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을 지역사회의 청년들이 지역산업의 특성과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환경변화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을 유연하게 구성한다면 지역사회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최석현·양지윤·정희정, 2016: 47)

23) 정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서울시 청년수당 반대 논리 중 '상호의무원칙'(strict mutual obligation)은 소득지원, 구직활동 의무, 교육훈련이나 여타의 재고용 프로그램 참여를 연계(혹은 전제)로 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주장도 합리적 의견이기예 중앙정부가 서울시와 같은 청년지원활동 사업에 한국형 '상호의무원칙'을 만드는 협치를 보이는 것이 필요함.

수니트 9.4%, 89만명), 청년 노동시장 ‘첫 취업 소요기간’ 11개월(2년 이상 15.9%, 첫 일자리 그만 둔 경우 19%), 노동시장 내 사회적 안전망 사각지대인 ‘불안정 고용’ 초단시간 근로 비중 17%(근로계약 체결 24.7%, 교육훈련 경험 15.9%, 법정최저임금 미달자 46.2%, 4대 사회보험 적용율 2% 미만)으로 상징 됨. 이와 같은 현실에서 기존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사업(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청년)은 ‘1년 이상 고용유지율’ 45%, ‘150만원 이상 임금’ 비중 46.7%에 불과한 실정임. 이런 이유로 기존 정부의 청년고용이나 일자리 사업은 현실의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것임.

-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한 심각한 고민 속에서 출발한 것임. 우리나라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흐름을 볼 때도 영미 혹은 유럽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할 국가적 과제임. 지난 2016년 7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을 신청한 20대 청년들에게는(또 선정 제외 3,478명 포함) 지금 버틸 시간과 기회가 필요 했던 것임. **우리 사회가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한 강요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은 진로 형태를 모색할 공간과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함.**²⁴⁾ 그래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어쩌면 ‘버팀목 수당’(bridge allowance)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름.
-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공백지인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채워주는 지방정부의 새로운 정책적 지향**을 제시하는 것이며(이병희, 2015; 김종진 2016b), 다른 한편으로는 글로벌스탠다드 기준(de facto standard)으로 이미 OECD와 EU 등에서 검토 제시(김종진, 2016b)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서울시 청년정책 논의 출발은 청년층의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 확대, 표준화된 고용(SER)이 아닌 형태의 고용이 증가(초단기 근로시간 고용, 니트 포함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난 집단 확대)되면서, **기존 중앙정부의 취업정책과는 차별성을 띄면서도 일부분 보완적 성격으로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사회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입법차원의 청년정책 관련 제도화 현황 - 20대 국회

- 서울시 청년수당 논의를 계기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필요함.** 청년수당의 본질적인 문제는 청년니트로 대표되는 미취업 혹은 불안정 상태의 **청년들이 기존 사회안**

24) 더민주당(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도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16.8.2)했음. 법안 발의 이유로 최근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복지부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지나치게 지자체의 주민복지 사무 권한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음. 개정안 취지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주민 복지증진을 지방정부의 자치 사무로 규정한 헌법 117조, 지방자치법 9조의 취지와 상충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야기 하고 있음.

전망에서 배제된 것이 핵심임. 때문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나라들처럼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방향설정과 사회정책으로서 실업부조 도입을 검토**해야 함. 구체적으로 구직수당이나 실업수당 성격의 실업급여의 필요성은 다소간 논쟁이 있더라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층)의 절박함을 위해서라도 제도화가 필요함.

- 첫째, 현행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년 정원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공공부문에서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연장하거나 시효를 삭제하는 것이 국회나 학계 의견으로 제시 되고 있음. 또한 현행 공공부문 할당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적용대상도 공공에서 민간 대기업(300인 이상 규모별 3%에서 5% 등)으로 확장하는 법률이 검토되고 있음.

[표 21] 구직급여 지원제도 확대강화 제시 검토안(민변, 2016)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현행	제시
이직일 현재 연령	30세 미만	90일	180일	90일	180일	120일	210일	150일	240일	180일	300일
	30세 이상 50세 미만	90일	180일	120일	210일	150일	240일	180일	300일	210일	36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80일	150일	240일	180일	300일	210일	360일	240일	360일

- 둘째, 고용안정망 확대 방안으로 저소득 혹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과 청년NEET의 고용유인을 위한 고용안전망(취업활동지원+패키지 고용서비스) 도입과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 청년(구직자+NEET)들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고용서비스에 참여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처럼 자기계발과 진로모색 등 포괄적 구직 및 취업활동지원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음.²⁵⁾

- 셋째, 현재의 노동시장의 재구조화를 위해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며, 이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와 고용안전망 확대강화를 의미함. 2016년 민변에서 대정부&국회에 제시한 보고서(2016)에 따르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수급요건, 기여요건)을 현행 완화, 소정급여일수(지급일수) 연장, 지급수준 상향(현행 직전 직장 평균임금)으로 안정적 구직활동 보장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2016년 9월 5일 기준으로 20대 국회에서는 청년 관련 14개 법안(청년기본법 3개, 청년창업지

25) 더민주당은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최저임금 100분의 30 이상 범위)하는 형태이고, 국민의당은 ‘구직촉진수당을 취업 후 상환’(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 범위)하는 형태임. 한편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실은 최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구직촉진수당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임.

원 1개, 청년고용촉진법 10개), 고용보험 관련 18개 법안(청년구직촉진 1개, 특별지역 고용보험 1개, 전직 및 자영업 등 적용 확대 1개, 고령자 적용 확대 2개, 특수고용 적용 확대 3건, 남녀평등 일가정 양립 등 관련 5개)이 발의한 상태임([표21], [표22]). 이 중에서 현재 사회적 논쟁이 되고 있는 청년수당이나 구직촉진수당 관련 내용은 청년고용촉진법 2개(더민주당 조정식, 이용득, 이원욱, 박홍근 의원), 고용보험법 2개(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더민주당 강병원 의원)에서 포함되어 있음.²⁶⁾

[표22] 20대 국회 여야 청년 고용 및 실업 관련 총선 공약 및 법안발의 주요 개요

	여당	야당		
	새누리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고용안전망 확대 내용	?	실업부조 도입 검토 (대상, 금액 확대)	고용(실업)보험 → 대상, 기간, 금액 확대	실업부조 도입 검토 (대상, 기간, 금액 확대)
고용안전망 개선 내용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지원금 (최저임금 100분의 30 범위)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 → 후납형 취업 후 상환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50%(1달 약 60만원))
법률 제정 (20대 국회)	청년고용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고용보험법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법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고용보험법개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 **더민주당**은 19대와 20대 현재 장기실업자, 폐업 자영업자 등을 포괄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을 공약, 당론으로 하여 추진 중임. 대표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19대,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피보험단위기간 120일 미만자 등, 구직촉진수당 최저임금의 100분의 80)이 있었고, 20대 국회에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조정식 의원 구직촉진수당, 이용득 의원 취업지원활동지원금 각각 최저임금의 100분의 30)이 발의 된 상태임.
- **국민의당**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흡한 상황을 인식하고 ‘청년구직촉진수당’ 제도를 입법 준비 중임. 국민의당은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후납형 청년구직촉진수당제를 도입하여 현행보다 넓은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은 구직 급여 상향(기존 50% → 60%), 기간 연장(기존 90일부터 240일 → 120일부터 270일), 가구소득 하위 70% 미만 청년구직자 최대 6개월간(최저임금 100분의 40 이상 범위) 구직촉진수당 지급(취업 후 일부/분할 납부 상환)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정의당**은 고용보험 개정, 미취업자 청년수당 지급, 실업부조 등을 19대 공약으로 설정한 바 있

26) 현재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제외하면 기본법은 없는 상황임. 반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등을 위한 기본법들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임.

음. 주요 내용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소진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밖 실업자에게 실업부조(구직촉진수당) 지급, 청년 미취업자에게는 청년디딤돌 급여지원,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기여기준 확대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20대 국회에서 정의당(이정미 의원)은 고용촉진특별법(민간기업 청년고용할당 확대/할당비율 5% → 여성,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 의무적 포함)과 고용보험법개정을 통해 청년구직 촉진수당(실업급여 50%, 월 60만원)과 제도 확대(자발적 이직자 포함 등)이 가능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 요약하면, 현재 주요 정당에서 논의되는 간헐적, 일회적 법안이 아니라 통합적이고 보편적이면서 정책 중요성 등을 고려한 사회정책으로 발전이 필요함. 대표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 강화** (기간: 연장 혹은 삭제, 대상: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 비율: 공공 5%, 민간 3%~5%),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자발적 이직자, 장기구직자 구직급여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미취업자, 신규 진입자, 자발적 이직자, 초단시간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영세 자영업자 등) 등의 검토가 필요함.²⁷⁾

27) 우리나라 실업구제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보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양자 사이의 갭(gap)을 채우는 정책으로 설계될 필요성이 있음. 예를 들면 사회적 단절자, 구직 불가능자 등 기존 노동시장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정책이 필요함.

[표21] 20대 국회 청년 관련 법안 발의 현황(2016년 9월 5일 기준)

연번	법안 명	의안 번호	제안 일자	제안자	청년 연령	법률 범위	기구, 조사, 기간	주요 법안 내용
1	청년기본법안	2000024	2016-05-30	신보라 의원 등 122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국가 지자체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 등	각종 정책결정과정 청년 참여증진 및 확대방안 강구, 청년단체가 추진 청년 능력개발, 사회참여 촉진·확대,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확대 및 창업 활동 지원 등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4	2016-05-30	박남춘 의원 등 10인		공공기관 대기업		(공공기관) 정원의 5% 이상 청년 고용 상향 조정, (민간기업)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직전 3개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상 기업, 500인 이상 사업체)
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9	2016-05-30	노웅래 의원 등 11인		공공기관 대기업	청년고용특별법 2019년까지 연장	(공공기관)정원의5%이상청년고용상향조정, (민간기업)300인이상 정원3%, 500인이상정원4%, 1,000명이상정원5%이상청년고용,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19	2016-06-07	박주선 의원 등 14인		공공기관 대기업	청년고용특별법 2020년까지 연장	(공공기관) 정원의 5% 이상 청년 고용 상향 조정, (민간기업) 300인 이상 확대 적용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122	2016-06-07	조정식 의원 등 10인	15세 이상 34세 이하		위원회(국무총리실) 유효시간 삭제	구직촉진수당 : 최저임금의 100분의 30 이상 범위 지급
6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00200	2016-06-13	조경태 의원 등 15인		중소기업 공공기관	계획수립 보증 및 지원	청년 창업 기업 제품 구매계획, 신용보증제도, 필요한 지원 등
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225	2016-06-14	김삼화 의원 등 12인			청년고용특별법 2020년까지 연장	(공공기관) 정원의 5% 이상 청년 고용 상향 조정, (민간기업) 정원 3% 이상 청년 고용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87	2016-06-30	백재현 의원 등 12인				정규직과비정규직구분제출, 청년 미취업자 채용 및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소요 비용 지원 등 통계 구축
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87	2016-07-19	채이배 의원 등 20인	34세 이하			청년취업 실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해 조사 공표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24	2016-07-27	조경태 의원 등 12인		정부 대학 등		정부가직업지도프로그램위탁'민간'의자격을'전문성갖춘기관,법인및 단체등'민간'으로구체화하고,효과적인직업지도될수있도록노력규정
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29	2016-08-10	이용득 의원 등 37인				취업활동지원금 : 최저임금의100분의30이상범위지급, (공공기관) 정원의5%이상 청년고용상향조정 (민간기업)300인 이상 정원3%, 500인 이상 정원4%, 1,000명 이상정원5%이상청년고용,
12	청년정책기본법안	2001620	2016-08-17	박홍근 의원 등 10인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 고용확대 및 복지증진 도모.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수당을 지급, 청년시설 설치
1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1762	2016-08-23	조원진 의원 등 11인				청년 미취업자 면접비용 지급, 청년 미취업자 구직 지원
14	청년기본법안		2016-08-24	이원욱 의원 등 10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위원회, 기구, 계획수립, 실태조사	청년 참여 촉진, 청년 능력개발과 복지 등. 청년주간(연간 1회), 기본계획(5년) 수립 시행, 교육학자금 지원, 주거 및 부채 등 계획수립, 출산양육 등 지원, 취약 청년지원, 청년생활지원금, 청년 시설 및 센터 설립

주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8월 30일 제출한다고 기자회견 했고, 주요 내용은 “민간기업까지 청년고용할당을 확대하고, 할당비율도 5%로 늘리는 한편, 청년고용할당 안에는 여성, 고졸, 지방대 출신 청년들이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2016년9월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표22] 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안 발의 현황(2016년 9월 5일 기준)

연번	법안명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구직급여 기여 요건	구직급여 일액	구직급여 기여 일수	법안 삽입 내용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29	2016-05-30	김성태 의원 등 122인	270일 이상으로	60%를 곱한 금액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 장	
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038	2016-05-30	박남춘 의원 등 11인				50세 이상 고령자 및 준고령자도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실시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액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589	2016-06-30	한정애 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일반근로자와같이고용보험에의무적으로가입하도록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780	2016-07-08	박광온 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함으로써 안정된 자녀양육 환경 제공하고,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참여를 확대
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0939	2016-07-18	남인순 의원 등 16인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규정, 20일 유급, 국가재정이나 사회보험에서 휴가 기간 대해 통상임금 상당 금액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따라 고용보험기금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근거
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146	2016-07-25	신용현 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기간(126일, 18주)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로 발생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하여 고용보험에서 지원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36	2016-07-27	홍영표 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제외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잔류와 생산적 복지 강화
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1	2016-07-28	김삼화 의원 등 11인		60%를 곱한 금액으로	120일부터 270일까지로 연 장	청년구직촉진수당 (가구소득하위70%미만, 최저임금의100분의40이상범위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68	2016-07-28	홍영표 의원 등 12인	180일에서 120일로 완화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에도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도록
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283	2016-07-29	김삼화 의원 등 14인				기관별 고지·수납·체납 건수 등 보험료 징수업무에 비례하여 출연금 분담 규모를 정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출연금 분담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
1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14	2016-08-01	김종훈 의원 등 21인		100분의 100 을 곱한 금액 (개별 & 특별연 장급여)		고용위기 지역·업종으로 지정되거나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에 대한 특례를 두어 요건을 완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180일로 확대
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345	2016-08-02	김도읍 의원 등 10인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권자로 한정(자활참여자 제외 문제)
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471	2016-08-08	송희경 의원 등 22인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 남성근로자로 하여금 3개월 이상 의무적 육아휴직 사용, 그 기간 통상임금 지급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남성 근로자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

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60	2016-08-11	김성식 의원 등 34인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유급, 매월 5일 범위, 6개월간 30일 한도) 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선지원 대상기업 30일분, 비우선지원대상기업 15일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기금 지원)
1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01586	2016-08-12	문진국 의원 등 12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16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	2001587	2016-08-12	문진국 의원 등 12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17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1668	2016-08-19	김삼화 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
18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1710	2016-08-19	강병원 의원 등 37인	240일에서 최장 270일		소정급여 일수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연장, 소정급여일수 기준연령 현행 30세에서 50세로 상향(30세 미만인자 소정급여일수 차등 부여 없음), 자발적 이직자도 6개월 경과할 때 까지 미취업 실업자에 대해 일정 기간 구직활동 할 경우 구직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 못한 실업자, 고용보험 가입 사실 없는 청년 실업자 등 구직촉진수당제도 도입
19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2002035	2016-09-01	김관영 의원 등 16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법제화에 맞춰 「고용보험법」상의 해당 사업의 경우 기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인 5조원을 유지코자
#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정미 의원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50%(1달 약 60만원)수준의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최대 1년간 15-34세 미취업청년에게 지급하고 청년층 특성에 맞는 교육 훈련 실시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3개월을 경과한 후 실업상태이면 실업급여 지급 △30세 미만 청년들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 폐지 등

주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2016년 8월 30일 제출한다고 기자회견 했고, 주요 내용은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주도로 하는 내용이나, 2016년9월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자료 : 국회 홈페이지 의안정보 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에서 '청년' 관련 키워드 검색하여 법안 내용 재구성(2016.9.5. 접속 기준)

참고문헌

- 국회입법조사처, 2015, 「OECD 주요 국가 청년 NEET의 특징 및 시사점」, 《지표로 보는 이슈》, 제40호.
- 권진호, 2016, 「청년수당,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가 필요하다」,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당, 69~70쪽.
- 김문희, 2015, 「OECD의 유럽 청년보장(Youth Guarantee)제도 사례 연구」, 《the HRD review》, 1월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8~115쪽.
- 김은표, 2016, 「기본소득 도입 논의 및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148호, 국회입법조사처.
- 김유선, 2016,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과제」, 《20대 국회, 노동시장 개혁 과제 무엇이 되어야 하나? 노동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 제126차 노동포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22쪽.
- 김종진, 2016a, 「서울시 아르바이트 인권 증진과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11~37쪽.
- 김종진, 2016b, 「지방정부의 청년수당과 청년배당 도입 의미와 시사점 : 이행기 청년노동시장의 제도적, 정책적 접근 모색 논의」,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더민주당, 16~78쪽.
- 김종진, 2016c, 「청년고용정책과 구직지원제도 논의의 사회적 의미: 청년구직촉진지원금과 청년활동지원사업 검토」,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당, 13~58쪽.
- 김충환, 2016, 「해외 사례로 본 실업청년 지원방안」, 『청년수당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국민의당, 71~75쪽.
- 김지경 외, 2015, 『20대 청년, 후기 청소년정책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기락, 2012, 「노동시장제도와 청년 고용 : OECD 주요 국가 노동시장의 제도적 상보성, 1985~2010」, 《경제와 사회》, 제96호, 비판사회학회, 252~287쪽.
- 박성재 외, 2012, 「청년 취업자의 저임금근로 진입과 탈출에 관한 연구: 노동이동의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Vol.28 No.1.
- 박진희, 2015, 「비진학 고졸 청년층의 고용현황과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 박진희, 2016, 「최근 청년 고용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 신광영, 2013, 「세대,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한울, 133~158쪽.
- 서울연구원,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추진 방안」, 서울연구원.
- 이태수, 2016,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더민주당, 72~78쪽.
- 이병희, 2015, 「청년 고용안전망 모색」,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15~19쪽.
- 이병희, 2016, 「서울시 청년보장정책이 제기한 정책 지향과 과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으로 본 청년 구직지원 및 구직안전망』, 더민주당, 79~84쪽.
- 이성재, 2015, 『대학교 졸업자의 초기 노동시장 이행 특성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오민홍, 2016,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임금보조금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1~26쪽.
- 오호영, 2016, 「청년고용정책의 효과분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오세미 외, 2015, 「청년패널로 본 청년 고용현황 및 변화 추이」, 한국고용정보원.
- 유계숙 외, 2014,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

- 회연구》, Vol.34 No.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재철, 2015, 「청년수당'의 논점과 방향」, 《이슈 브리핑》, 2015-31호, 민주정책연구원.
- 장지연·이병희·은수미·신동균, 2011,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신진욱, 2016, 「다중격차와 청년세대」, 『다중격차 :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페이퍼로드, 79~100쪽.
- 정민우 외, 「청년 세대, '집'의 의미를 묻다 : 고시원 주거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Vol.45 No.2, 한국사회학회, 130~175쪽.
- 정준영, 2015, 「청년안전망 제도의 의미와 입법과제: 이행하는 청년을 위한 삶의 안전망」,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104~129쪽.
- 정병석, 2010, 「한국 노동시장정책의 평가와 발전방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활용」, 『노동정책연구』 제 10권 제2호, 한국노동연구원, 155~185쪽.
- 조민수 외, 2015, 『청년층의 하향 취업 현황과 이동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주무현, 201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지역고용사업」,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최석현 · 양지윤 · 정희정, 2016, 「청년층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서비스 개선 방안」, 한국지역고용 학회 학술대회, 47~67쪽.
- 채창균·신동준·류지영, 2015, 「청년층의 고용형태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패널브리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94~101쪽.
- 피터 보켈(배충효 옮김, 2016), 『청년실업 미래보고서』, 원더박스.
- 필리페 반 빠레이스(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2010),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분배의 재구성분배의 재구성 :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나눔의집, 21~56쪽.
- 황선웅, 2016.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역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 국내외 실증분석 결과와 시사점」,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 7~26쪽.
- OECD, 2014, *OECD Youth Action Plan, Options for an Irish Youth Guarantee*, OECD.
- OECD, 2015, *LOCAL IMPLEMENTATION OF YOUTH GUARANTEES: Emerging Lessons from European Experiences*, OECD.
- Eurofound, 2012, *NEETs. Young people 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Dublin, Ireland.
- Rubery, Jill, 2016, *Re-regulating for inclusive labour markets*,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I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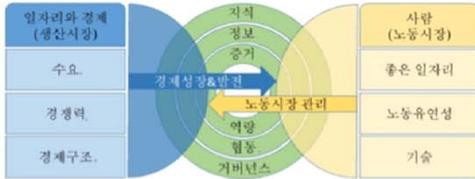
발제 2

수원형 청년고용 일자리네트워크 제안

이 희 원

수원시 비정규직노동자 복지센터장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기본모형



출처 : URBACT II, More jobs : Better Cities – A Framework for City Action on Jobs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결론

수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조사

- 수원시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 조사
- 수원시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 조사
- 수원시 청년 노동력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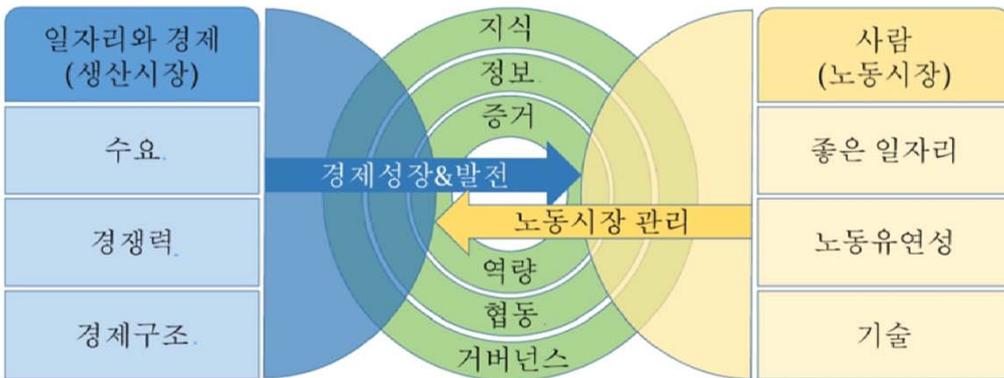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 청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당사자들(청년, 기업, 학교, 직업훈련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야 함. 청년들만의 자족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됨.
- 경기적인 청년 일자리 포럼이 네트워크의 핵심
- 수원시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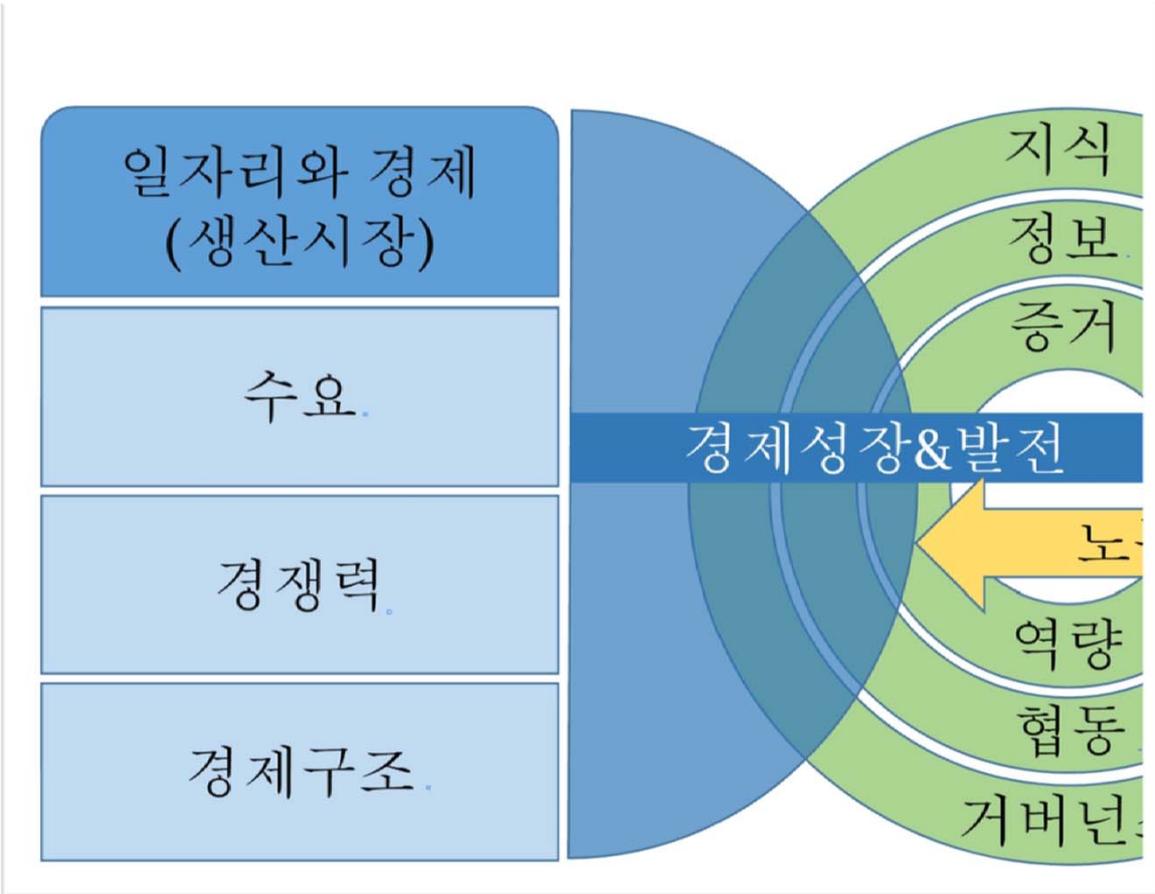
수원시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니레지하자 청년고용포럼
(Nyiregyhaza Youth Employment Forum)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기본모형



출처 : URBACT II, More jobs : Better Cities – A Framework for City Action on Jobs



일자리와 경제 : 수요

- 일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규모와 성장
 - 일자리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조직(기업)으로부터 나오고, 따라서 성공적인 생산시장은 일자리 증진에 필수적
- 새로운 일자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로부터 발생
 - 지역소비 : 캠페인, 공공조달, 지역경제통합, 지역기업간 연계 강화, 지역화폐, etc
 - 외부수요 : 지역기업 수출 지원, 기업문화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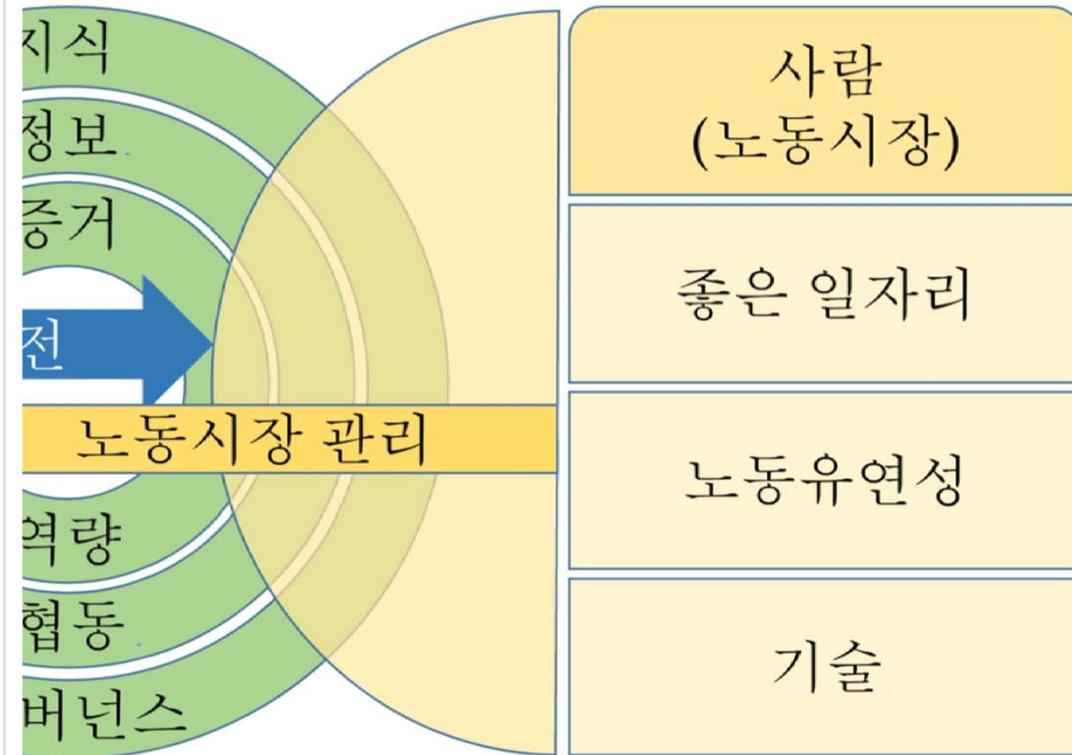
일자리와 경제 : 경쟁력

-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측면도 중요
- 기업이 생존가능성을 높이고 증가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함

생산물 차별화
산업 클러스터 발전
혁신
기업전략
경영관리

일자리와 경제 : 경제구조

- 외부충격이나 불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제구조
가장 잘 할 수 있고, 가장 경쟁력있는 것에 전문화
더불어 다양한 경제구조를 가짐으로써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성장
공공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일자리 친화적 산업 육성 : 녹색산업, ICT, 가사서비스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동시장 : 좋은 일자리

- 지역경제 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에 불충분
 - 경제성장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보장이 없음
 -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일자리인지에 대한 보장이 없음
 - 주민들이 일자리에 쉽게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음
-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있어야 함
 - 특정 산업 또는 직업 타게팅
 - 고용주가 공공조달계약 조항을 지키도록 하는 것
 - 최저임금 준수 캠페인
 - 더 나은 일자리로의 경력개발 경로/사다리

노동시장 : 노동유연성

- 노동시장은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일자리 유형의 변화에 탄력적이어야 함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데 매우 중요

교육과 노동을 연계하는 것이 일자리 매칭에 중요

- 양질의 정보, 조언, 카운셀링 서비스, 공간적 접근성 확보 계획(교통, 주거 등) 필요.

이것이 없으면 일자리는 타지역 이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사회적 부문은 주변화되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것임

노동시장 : 기술

- 현재의 일자리는 지식이 강조되고, 높은 숙련도를 요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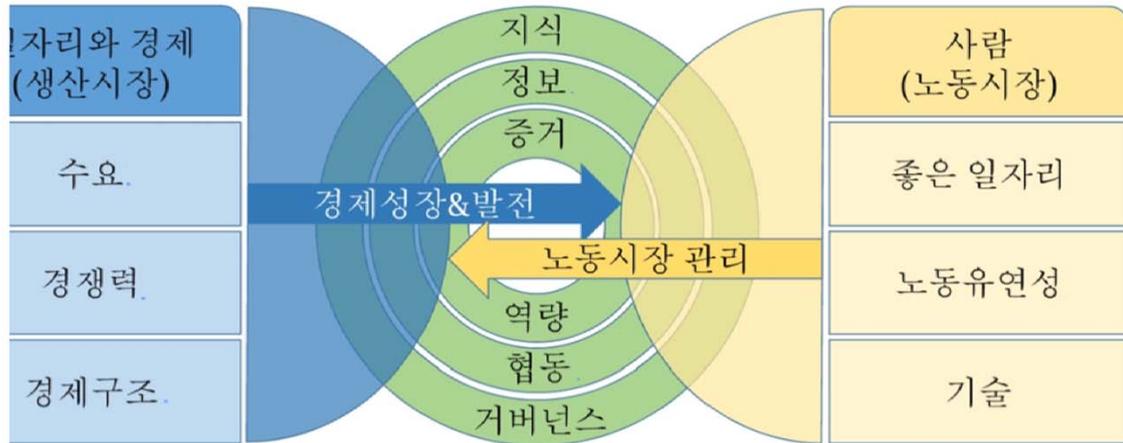
낮은수준의 기술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음

학교, 대학 등에서 노동시장의 수요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

-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 지역에서는 기업으로 하여금 고기술 노동력을 사용하도록 촉진하여야 함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에 대한 투자

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기본모형



: URBACT II, More jobs : Better Cities – A Framework for City Action on Jobs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연계 : 지식, 정보, 증거

"되기를 바라는 곳(where they want to be)보다 현재 있는 곳(where they are)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Debra Mountford, Senior Policy Analyst and Manager at the OECD LEED programme)

- 취업 정보,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 교육/훈련에서 이탈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 등이 공유되고 사용되어야 함
- 정보는 시장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참여자들에게 시그널을 주어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침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연계 : 지식, 정보, 증거

- 장래에 바뀔 것과 유지될 것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요한 자산, 강점과 약점, 경쟁력 있는 자원은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들이 참여자들에게 전달되고, 공유되어야 함
- 그래야 시장에 필요한 기술, 경쟁력 있는 분야 등 공통된 의제를 도출할 수 있음
- 유사한 타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및 주요 변수 비교 필요
고용수준/성장, 생산성, 기술수준 및 경쟁력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연계 : 지식, 정보, 증거

-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떠한지를 알아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측정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하고, 이는 측정 기준과 성과지표가 필요함을 의미
- 새로운 경제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측정기준과 성과지표(예. 균형성과기록표)가 필요할 수 있음
- 이를 통한 모니터링과 평가는 우리가 최적의 정책을 선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증거가 됨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연계 : 역량,협동,거버넌스

- 중요한 행위자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되면 정책적 정합성과 정책간의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음. 그 자리에서 전략이 결정될 것이고, 가치가 공유될 것이며, 공통의 목적이 설정됨
- 하나의 도시 수준을 넘어선 대도시권 수준에서 결합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정부, 기업, 교육기관의 '삼중나선'을 넘어서 노동시장의 여러 기구들(노동조합, 취업알선기관, 작업현장의 노동자 등)과 시민사회까지 포함되어야 함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연계 : 역량,협동,거버넌스

- 도시의 여러 조직과 기구들의 역량과 능력을 증진시켜야 성공할 수 있음.
경제 및 고용 관련 담당자들의 기술과 능력개발에 투자해야 함
국내/국제 네트워크 참여
- 이러한 것들을 통합적으로 조정하는 정치적/경제적/전문적/조직적 리더십이 필요
카리스마 있는 개인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자신의 역할을 하는 협동적 리더십이어야 함

수원시 청년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다섯-셋-하나' 캠페인

다섯	1. 기술투자 3. 교육기관과의 연계 5. 견습기회 제공	2. 창업멘토 4. 일자리 제공
셋	1. 잠재적 능력 발휘 3. 지역경제 성장	2. 사업에 이익
하나	경제성장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헤드스타트(Headstart)

목표	6개월 이상 실업자 3,000명 지원
예산	500만 파운드(약 75억 원)
지원내용	6개월 동안의 면접보장 취업자 멘토 기업 임금보조 etc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견습허브 및 견습훈련

허브	견습생을 고용하는 기업의 비중 증대(12%→20%) 를 목표로 특히 중소기업에 견습에 대한 조언과 각종 지원 제공 4년내 15,000개의 견습 일자리 창출 효과
훈련	견습생을 받을만한 준비가 덜 된 기업들에게는 견습 훈련기관이 2,500개의 견습훈련을 한 후 중소기업들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견습훈련 졸업생을 채용하 게 함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청년실업대책 사각지대 해소

중앙정부가 18~24세 니트(NEET)쪽에 집중. 16~17세의 숨겨진 니트쪽을 지역 공동체 그룹들을 통해 찾아 노동시장에 연계

청년 장기실업자 지원

전문가 자원봉사 및 지역공동체를 활용해 취업에 다양한 애로를 갖고 있는 청년 장기실업자를 지원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1

리즈지방 기업파트너십
(Leeds city Region Enterprise Partnership)

교훈

공공기관과 고용주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주들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의 측면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비용면에서 어려울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매우 크다.

면밀한 정책과 실행만큼이나 태도, 정보, 관계 그리고 행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와 잠재적 해결책을 진단하고, 그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니레지하자 청년고용포럼 (Nyiregyhaza Youth Employment Forum)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어떻게하면 기업이 청년들을 고용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해야 청년들이 우리지역에 머무을까?"

"청년과 기업에게 물어보라"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니레지하자 청년고용포럼 (Nyiregyhaza Youth Employment Forum)

- 수원과의 유사성

이해당사자들간의 개방적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함
지방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고용정책은 매우 중앙집중적임

- 포럼 조직의 어려움

워크숍이나 작은 컨퍼런스를 조직하는 것이 아님
누가 책임주체가 될 것인가? 청년과?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모든 대상자를 참여시켜야 함
대기업은 현상유지를 선호하기 때문에 포럼에 소극적임
중소기업은 정치적 자원의 부족, 대표성의 문제 등으로 접근하기 어려움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니레지하자 청년고용포럼 (Nyiregyhaza Youth Employment Forum)

- 교훈

헌신적인 주체가 필요하다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 서둘러서는 안된다
대기업에게만 집중해서는 안되고, 중소기업들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참여시켜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청년들(대학생, 실업자, 직업훈련생 등)을 참여시켜라
청년들이 기업인들과 대등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준비를 철저히 하라(질문지 구성, 소규모 집단 구성, 평등한 토론문화 조성, 작고 구체적인 실천, 회의결과의 공유 등)

청년고용 네트워크 제안 : 사례2

니레지하자 청년고용포럼
(Nyiregyhaza Youth Employment Forum)

"포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테이블에서 서로 진솔한 대화를 했다는 점은 훼손되지 않는다" (니레지하자 부시장)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제안 : 결론

수원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조사

- 수원시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 조사
- 수원시 민간부문 일자리 수요 조사
- 수원시 청년 노동력 실태조사

수원시 청년 일자리 네트워크 구성

- 청년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 측면의 당사자들(청년, 기업, 학교, 직업훈련기관,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야 함. 청년들만의 자족적인 모임이 되어서는 안됨.
- 정기적인 청년 일자리 포럼이 네트워크의 핵심
- 수원시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 필요

토론 1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본 청년일자리

이 혜 연

취업준비생(경희대 졸)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본 청년 일자리

이 해 연 (취업준비생)

1. 들어가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가 매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확대해 왔음에도 청년실업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기준으로 올해 7월 청년실업률은 9.2%입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지만 10%에 달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취업 또는 시험 준비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어 고용지표에 잡히지 않는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체감 청년실업률은 훨씬 높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으로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싶습니다. 청년들도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모든 취업준비생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점이 있다고 해도, 청년 일자리를 논하는 자리에 구직 중인 청년이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준생 입장에서 느낀 점

정부는 청년고용대책으로서 매년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대부분 인턴, 계약직 등 한시적인 일자리의 수를 늘리는 데 그쳤습니다. 고용안정성이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취준생의 입장에서 느낀 점은 첫째,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활하는 데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이 적절하며, 어느 정도의 고용 보장이 되는 일자리가 적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가 적은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결과, 졸업을 유예해서라도 몇 년 씩 취업 준비를 하거나 고시 공부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두고 후자는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격차가 크고 복지나 고용안정성 면에서도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입니다. 근무조건이 열악한 자리에 취업하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준비해서 나은 일자리를 얻고 싶다는 심정에 공감합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이에 수긍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좋은 일자리를 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취업시장에서 고용조건이 좋은 기업일수록 고학력자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학력에 따라서 일차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대학 등록금, 스펙 쌓기에 필요한 사교육비·시험 응시료, 취업·시험 준비를 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는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도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청년이 있는 반면, 집안 형편 때문에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전자보다 후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이 낮고, 열악한 일자리에 내몰리기 쉽습니다.

제가 취준생의 입장에서 느낀 점은 둘째, ‘청년들에게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처럼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생활비를 마련해야 하는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와 성남시를 필두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수당 등이 대안이 될 것입니다. 청년 수당을 지급하면 이들 청년도 취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수당이나 보조금이 청년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입장에서서는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 더 절실합니다. 취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으로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나 사회가 청년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말을 마칩니다.

토론 2

청년들의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한 지 혜

경기청년유니온 위원장

경기도 청년노동환경실태조사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 → 서울 약 200만 명

경기도 전체 취업자 중 20%

10명 중 2명 은 서울로 출퇴근

2~30대 청년비율 50% 이상

같은 일을 해도 더 높은 임금

[경기 → 서울] 254만 원

[서울 → 경기] 231만 원

[경기 → 경기] 154만 원

[서울 → 서울] 181만 원

조사
배경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조사
배경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 정보

경기도 내 일자리 수준 파악 필요성

일자리



청년

일할 사람 찾으신가요?

구인

경기도 내 일자리 임금 수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청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구직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워크넷 사이트 모니터링 시작

Copyright ©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all rights reserved.

다른 나라도 이렇게 힘들까?

OECD 평균 통근 시간 : 38분

노르웨이 ----- 14분

영국 ----- 22분

독일 ----- 27분

일본 ----- 40분

미국 ----- 21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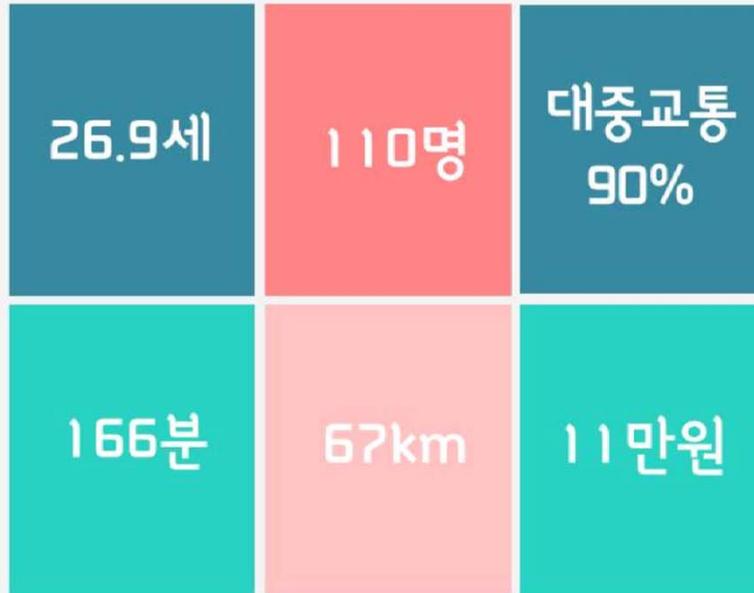
호주 ----- 25분

이탈리아 ----- 34분

한국 ----- 58분

한국 통근 시간 노르웨이 4배 이상 / OECD 평균 1.5배

응답자 기본 정보



경기도 청년 출·퇴근 비용 실태조사

일상 생활

퇴근 후 집에서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

기상 6시 43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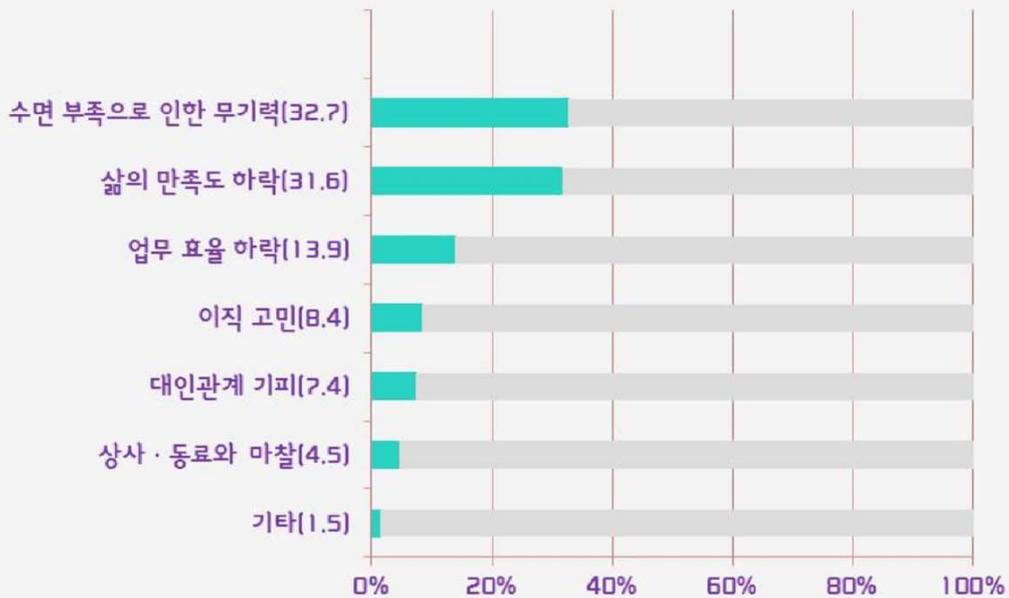
귀가 9시 17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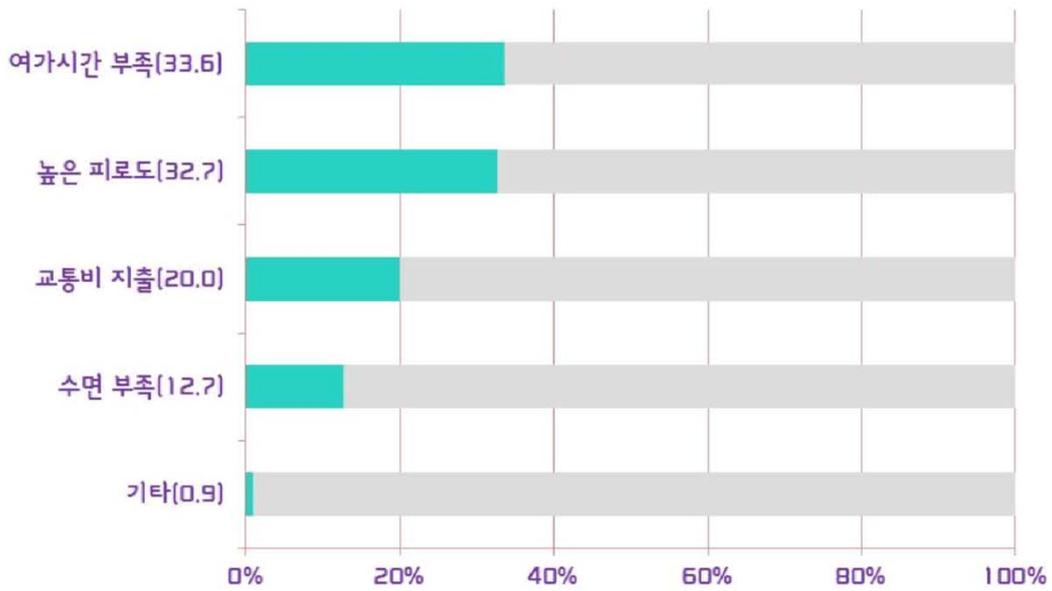
귀가 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1시간 35분

피로를 느끼는 비율 90%

피로가 개인 및 직장 생활에 미친 영향



서울로 출퇴근 시 비용으로 느끼는 것



서울의 일자리를 선택하는 이유



경기도로 이직 시 고려하는 것



서울로 출퇴근 하고 있는 청년 절반
장시간/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이직을 고민

?

53%

220만 원

워크넷 수원지역 구인공고 모니터링 조사

채용정보 비교보기 (페이지 3개) > 검색건수 2,217건 최근등록일순 10개씩 보기

회사명/기업형태	채용제목/업종/근무지역	학력/경력	등록일	마감일	채용처
소송피부과의원	수원 소송피부과에서 간호원장을 ... 회사내규에 따름 경기 수원시 ...	고졸 경력무관	15-08-10	15-08-31	
대한산업보건협회 수원센터	대한산업보건협회 경기산업보건센터 ... 회사내규에 따름 경기 수원시 ...	대졸(2~3년) 경력무관	15-08-10	15-08-31	
㈜공간에이앤아이	【설계/디자인】모델하우스 - 설... 3,000 만원 경기 수원시 ...	대졸(2~3년) 경력무관	15-08-10	15-08-31	
㈜원은세상건축인 대리여	설내건축 업무 담당자 모집 회사내규에 따름 경기 수원시 ...	학력무관 경력무관	15-08-10	15-08-31	
㈜원은세상건축인 대리여	【수원/가평임박】인계동 업무대표기... 175 만원 경기 수원시 ...	학력무관 경력무관	15-08-10	15-08-31	

회사명	채용분야	인원	근무지역	근무형태	학력	경력	등록	마감	기타
원은세상건축인 (주)원은세상건축인대리여	설계/디자인	연봉	수원시	주5일	대졸	3년	08월 10일	08월 31일	대졸2~3년
원은세상건축인 대리여	건축업무담당	회사내규에따름	수원시	가타	무관	무관	08월 10일	08월 31일	
원은세상건축인 대리여	역면관리	월급	수원시	주5일	무관	신입/1년	08월 10일	08월 28일	

원 단위로 기업

세미랩 코리아㈜	Field Service Engi... 회사내규에 따름 경기 수원시 ...	대졸(2~3년) 신입/경력	15-08-10	15-08-28	
㈜클로브	매점카뎀 포포6대무 수월점 비리스... 130 만원 경기 수원시 ...	학력무관 신입/경력1년	15-08-10	15-08-28	

채용정보 비교보기 (페이지 3개)

<<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건설업](#)
[IT업](#)
[의료업](#)
[교육업](#)
[금융업](#)

기본 정보

8월
한 달간
실시

총
4300건

구인공고 내 임금 게시율

44%

56%

80%

48%

200만원 미만의 일자리 대학생 선호업종 상위 5개

평균임금 180만원
중위임금 166만원

178만원

경력 무관 채용

43.5%

신입직원 채용 비율

19%

경력직원 채용

37.5%

취업에 요구되는 경력

2.7년

결론

청년노동 · 일자리 정책,
'양'이 아닌 '질'에 집중해야 한다.

청년기본조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생활임금제,
민간영역으로 확대해 일자리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결론

수원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인 · 구직 사이트

청년들의 일 경험을 채워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

토론 3

청년일자리추진을 위한 예산,조례

장 정 희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2012.02.06 조례 제30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수원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수원일자리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수원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 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5조(시설)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③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4.10.07 조례 제3331호

(일부개정) 2015.01.06 조례 제3358호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4년마다 수원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3.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4.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일자리 영향 평가) 시장은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증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게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하고 「수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 SOS 운영 조례」 등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한다.

제9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01.06)

제12조(포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해서는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4.10.07 조례 제3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내용생략)

(58)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59) ~ (60)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4.08 조례 제352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수원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 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3. “출자·출연기관”이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할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지원 사업)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향상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
2. 구인·구직 등 채용정보 제공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채용박람회 개최
4. 청년 일자리 제공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5.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 등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 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청년고용확대) ①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 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중 정원의 30명 이상인 기관의 장은 신규 직원 채용 시 100분의 30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 미취업자에게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04.08 조례 제3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2016.04.08 조례 제35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과 자립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되,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 및 그 밖의 관계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정책 관련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 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
 - 다. 청년의 고용촉진·일자리 질 향상·창업 지원
 - 라. 청년문화의 활성화
 - 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 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자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제8조(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으로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5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
 5.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사망·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기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

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협의하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개최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3장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지원센터

제15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거나 청년정책 연구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수원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5. 국내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6.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청년의 참여 확대 및 권리 보호 등

제17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청년의 범위, 활동분야, 참여방식 등이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①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범위에 따라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① 시장은 관련 법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

급, 공유경제를 활용한 주거임차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청년의 부채경감 등) ① 시장은 부채가 있거나 부채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금융소비자 교육과 상담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시장은 청년지원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의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권리보호 등) 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자유로운 참여와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청년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6.04.08 조례 제3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토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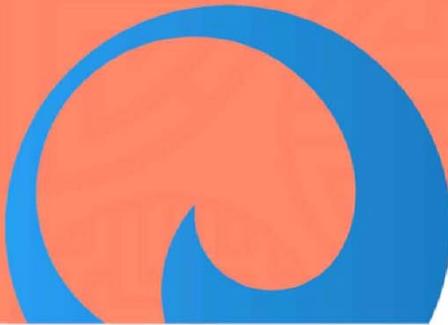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과 과제

신 화 균

수원시 일자리정책과장



수원시 청년일자리 정책과 과제



CONTENTS

01 수원시 청년 일반현황

- 청년의 정의
- 수원시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

02 수원시 청년일자리 주요정책

- 일자리교육 청년해외취업 K-Move 스쿨 지원사업
수원형 청년 창업자 육성사업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 일자리체험 청년중 및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
청년바람지대 청년취업 플랫폼 구축
- 일자리연계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청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일자리지원 기관 운영 및 지원

03 수원시 청년일자리 과제

01 수원시 청년 일반현황

- 청년의 정의
- 수원시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



청년의 정의

📍 청년의 사전적 의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

📍 청년의 법적 의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

대통령이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수원시 청년인구 및 고용 현황

청년인구 현황

(2015 경기도수원시가지자료조사발해, 단위:명%)

구 분	총 인구	청년 인구	청년 구성비(%)	비 고
전 국	51,515,399	11,792,347	22.89%	청년 만18~34세 기준
경 기 도	12,504,790	2,914,165	23.30%	
서 울 시	10,035,597	2,552,208	25.43%	
수 원 시	1,185,196	311,825	26.31% (전국 3.4% ↑)	

수원시 청년고용 현황

(통계청자료 발해 단위:명%)

구 분	2015년 상반기			2015년 하반기			비 고
	취업자수(명)	인구비율(%)	고용률(%)	취업자수(명)	인구비율(%)	고용률(%)	
계	576,800	100	58.8	588,500	100	59.2	
15 - 29세	104,600	18.1	41.9	106,100	18.3	42.2	
30 - 49세	313,800	54.4	74.9	316,300	54.3	75.1	
50 - 64세	138,900	24.1	64.1	144,300	24.0	64.2	
65세 이상	19,600	3.4	20.4	21,800	3.4	20.4	

※ 155개 시군 청년층 취업자 비중: ① 구미시(19.4%), ② 수원시(18.0%), ③ 천안시(17.9%), ④ 안산시(17.5%), ⑤ 아산시(17.5%)

02 수원시 청년일자리 주요정책

일자리 교육

- 청년해외취업 K-Move스쿨 지원사업
- 수원형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
-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일자리 체 험

- 청년중 및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
- 청년바람지대 청년취업 플랫폼 구축

일자리 연 계

- 청년 푸드트럭 지원 사업
- 청년 일자리박람회 개최
- 일자리지원 기관 운영 및 지원

수원시 청년일자리 자원체계구축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청년해외취업 K-Move 스쿨 지원사업

교육사업

글로벌 청년층 인재 육성으로 대외경쟁력 제고 및 청년실업 해소

- 📍 기 간 | 2015. 12. 14. ~ 2016. 7. 29. (약8개월)
- 📍 대 상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만34세 이하 대학 졸업자
- 📍 인 원 | 30명
- 📍 장 소 | 수원상공회의소
- 📍 내 용 | 외국어(일본어), IT 등 구인수요 맞춤형 교육 실시 후 해외취업 지원
- 📍 문 의 | 일자리정책과 ☎ 228-3272, 수원상공회의소 ☎ 244-3454

※ 2016년 제1기 사업 취업실적 : CAL 등 19개 업체, 25명 취업 (2016.8.31.현재)



[일본 방문: 2016. 4월]

수원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기초자치단체 최초)

- 취 업 처 : 일본IT 기업체 (일본키스코 등 8개 업체)
- 급여수준 : 2,500만원 이상 (각종 수당 별도)
- 채용형태 : 정규직
- 출국일시 : 7~ 8개월간 국내 연수 종료 후 출국
- ☞ 일본 현지 기업체 취업 구인의뢰서 확보 후 추진

수원형 청년 창업가 육성사업

교육사업

만34세 이하 청년 창업 희망자의 창업 준비부터
창업 후 조기정착을 위한 맞춤형 육성사업 실시

- 📍 기 간 | 2016. 7월 ~ 12월
- 📍 대 상 | 만34세 이하 청년 창업 희망자
- 📍 인 원 | 20명
- 📍 장 소 | 한국일자리창출진흥원
- 📍 내 용 | 창업 절차, 재무 계획, 사업아이템 개발 등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 공간 제공 등 창업·창직 연계 지원



특성화고 취업지원 사업

교육사업

교육단계부터 특성화고 8개교 재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기능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 📍 **신입생 진로캠프 운영 | 매년 2월 ~ 6월**
8개교 특성화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합숙교육 실시
- 📍 **찾아가는 취업특강 | 매년 4월 ~ 10월**
이력서 클리닉, 면접스킬 등 실질적 취업교육 실시
- 📍 **특성화고 일자리상담사 배치 | 6개월 간**
8개교 특성화고에 일자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상시 교육 및 취업 컨설팅
- 📍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 연중 1회**
특성화고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한 채용박람회 개최
- 📍 **특성화고 기능경기대회 지원 | 매년 4월, 10월**
우수기능인 육성을 위해 경기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지원



청년층 및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운영

채용사업

시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직장 현장과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대학생

- 📍 **대 상 | 수원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재 휴학생)**
- 📍 **인 원 | 연200여명**
- 📍 **장 소 | 시청, 사업소, 구청 및 동주민센터**
- 📍 **내 용 | 매년 1월, 7월 중 인턴 프로그램 실시**
- 📍 **문 의 | 일자리정책과 ☎ 228-3272**

청년층

- 📍 **대 상 | 수원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 미취업자**
- 📍 **인 원 | 연50여명**
- 📍 **장 소 | 시청, 사업소, 구청 및 동주민센터**
- 📍 **내 용 | 매년 9-11월 중 인턴 프로그램 실시 취업 프로그램 연계**
- 📍 **문 의 | 일자리정책과 ☎ 228-3272**

청년희망드림 프로그램 운영

세명사업

대졸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특성과 적성을 분석하고, 개인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상담

- 📍 기 간 | 매년 1월 ~ 10월 (매주 목요일)
- 📍 대 상 | 만30세 미만 대졸 구직자
- 📍 인 원 | 장기 : 연간 6회 120명 (교육시간 : 30시간)
단기 : 연간 4회 85명 (교육시간 : 8시간)
☞ 취업률 76%('16.8.22기준)
- 📍 장 소 | 수원시청
- 📍 내 용 | 교육비 무료
- 📍 문 의 | 수원일자리센터 ☎ 244-3874



청년바람지대 청년취업 플랫폼 구축

세명사업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취업과 창업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특강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바람지대를 거점으로 한 청년취업 플랫폼 구축

- 📍 최신 일자리 정보 제공
취업 정보제공 PC 설치
- 📍 취업특강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매주 금요일 14:00~16:00)
청년구직자 전문 컨설턴트 파견
- 📍 브라보 청년 굿잡 채용 한마당 개최 (연 3회)
청년 구직자 면접 및 현장채용 기회 제공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일자리만남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 푸드트럭 지원사업 실시



- 📍 신청자격 |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 영업업종 |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
 - 📍 영업장소 | 시청, 구청 등 공공기관, 종합운동장, 공원 등
 - 📍 계약기간 | 2년 [1회 갱신 가능]
 - 📍 지원내용 | 푸드트럭 창업자에 대한 창업자금 지원 [4천만원 이내, 금리 1.19%]
- ※ 2016. 7. 30. 기준 : 1 ~ 5 호점 영업 중

청년일자리 박람회 개최

일자리만남

‘기업-구직자간’의 현장면접을 통한 일자리 제공



- 📍 JOB 아 YOU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연1회
청년, 여성, 중장년을 망라한 일자리 박람회 개최
- 📍 찾아가는 (청년) 일자리 박람회 개최 | 연4회 (구별 1회)
장안·권선·팔달·영통 4개구를 순회하며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

수원시 청년일자리 지원 기관

일자리안내

수원일자리센터 | 수원시청 본관 1층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상담, 취업 정보제공,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원고용복지+센터 | 팔달구 경수대로 584 신동아스텔 2~4층

일자리, 복지, 서민금융 등 상담과 지원을 한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영통, 팔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다시 일하고 싶은 여성 구직자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 경기대학교, 아주대학교

대학 재학생, 졸업생, 타대학교 학생, 인근 지역 청년까지 취업 및 창업 지원기능을 연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3 수원시 청년일자리 과제

- 수원시 청년일자리 과제

수원시 청년일자리 추진과제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16.4월)에 따라 매년 계획 및 성과분석 실시

📍 정책의 수요자인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정책 추진

청년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지자체에서 실행가능한 요구를 정책에 반영



THANK YOU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